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정은미 연구위원
김태환 위촉연구원
박은지 위촉연구조원



KREI

연구 담당

정은미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4장 집필

김태환 | 연구원 | 부록 집필

박은지 | 연구조원 | 부록 집필

수탁연구보고 C2020-34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연구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0.

발행인 | 김홍상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프리비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농업경영체제도 개선 연구」 과제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정 은 미 (연구위원)

연구참여자: 김 태 환 (위촉연구원)

박 은 지 (위촉연구조원)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시간과 경영 참여의 정도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인력뿐만 아니라 경영인력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가 활발할수록 농업의 6차 산업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 새로운 경영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했지만, 공동경영주로 가입하는 여성농업인 수는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농업 이외의 겸업 활동을 수행해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하지만, 공동경영주는 겸업 시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여성농업인이 겸업을 하는 이유는 농업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농업은 본래 계절적 실업이 존재하는 업종이므로 겸업이 불가피하고, 또한 농업 생산 이외에 여성농업인이 주로 참여하는 가공·유통·판매를 겸하는 것이므로 겸업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와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해외사례를 통해 공동경영주의 자격기준과 그에 합당한 지위를 검토하고 여성농업인단체와 간담회, 농업경영체 제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 의지를 높이고 경영능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2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에 대한 양성 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공동경영주 제도를 2016년부터 도입했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도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경영주 등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은퇴자로 간주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부여하며 직업군에서 제외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인 중 60세 이상이 남성 56.7%, 여성 59.8%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2015년 5.2%로 급격히 감소하지만,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참가율, 즉 농림어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66%로 증가하고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작목은 노지채소 65%, 화훼 및 특용작물 63.3%, 전작 49.5%로 기계화율이 낮은 작목일수록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

농업인의 지위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주, 경영주의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 3가지 지위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6년 현행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도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구분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 별지 서식의 내용으로 파악한 ‘공동경영주’ 개념은, “①경영주 이외의 농업인, ②경영주의 배우자, ③경영주 이외의 농업인 또는 배우자가 등록을 희망하여 위 별지에 기재함으로서 인정”된다. 공동경영주는 명칭은 비록 ‘공동경영주’로 되어 있으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불과하고 그 배우자가 ‘농업을 경영하는 자’일 뿐이다.

한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함으로서 경영체와 정부 간 계약 개념이 성립한다. 다만,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분명해야 하지만,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은 1) 농업인의 기준(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1천㎡ 농지를 경작·재배,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등)이 지나치게 간단하여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2) 농업경영체가 사업체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영농규모가 세분화·체계

화 되지 못했으며 3) 전체 농가의 90% 이상인 가족농 농업경영체는 아직까지 사업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했다. 반면, 국내 농가가 110만 가구인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체는 160만 개소 이상인 것은 농가 구성원 중 경영주 이외 또 다른 1명 이상이 별도의 경영체로 분리하여 경영주로 등록한 것이다.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 지위가 있지만 실제 권리가 경영주와 동일하지 않다보니 공동경영주가 아니라 경영주로 등록하는 실정이다.

일본 농정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지원에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농촌 사회에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남아 있고 이 영향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하는 것이다. 단,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경우는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때이다. 즉, 농업경영체로서 인적·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1999년 농업기본법에 ‘함께 영농하는 동료’라는 지위를 대체하여 ‘배우자-협력자’의 지위를 신설하였고, 2005년 농업기본법은 여성농업인이라면 경영주, 임금노동자, 배우자-협력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위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와 혜택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사례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유능한 농업경영인도 부족하게 되면서 농업경영체 제도를 정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가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이나 지역농업의 담당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게 되었다. 또한 농업경영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로서 인증받고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가족농도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조세 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영체이고, 이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의미있는 지위 획득이 되며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농업 이외의 겸업 활동을 수행해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하지만,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 ‘공동경영주’ 포함)는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겸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되지 않거나 기등록자도 취소가 되어 공동경영주의 자격을 잃게 된다.

여성농업인이 겸업을 하는 이유는 농업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농업은 본래 계절적 실업이 존재하는 업종이므로 겸업이 불가피하고, 농업 생산 이외에 농산물 가공·유통·판매 등 겸업으로 인한 소득도 낮은 사례가 다수이므로 겸업을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공동경영주가 사업체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하기 위해, 프랑스 사례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가족농가’와 ‘농업경영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점을 시정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공동경영주, 임금노동자에 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농업경영체법의 제2조(정의) 제3항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를 농업인(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규정해야 한다. 단, 사업체로 정의할 경우,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과 같이 “농업 사업체의 최소 규모 규정 및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즉 농업경영체 제도의 변경보다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업관련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둘째, 2020년부터 시행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의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공동경영주의 겸업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공동경영주가 겸업에 종사하는 경우 겸업소득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가 필요하다.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2장 농업 환경 변화와 여성농업인

- 1. 농업구조와 여성농업인 5
-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당면문제 2

제3장 여성농업인의 지위 관련 법·제도

- 1. ‘농업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17
-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30
- 3.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의 시사점 35

제4장 해외 여성농업인 사례

- 1. 일본 37
- 2. 프랑스 45
- 3. 해외 사례 시사점 51

제5장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

- 1.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의 필요성 53
-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의 법적 대안 55
- 3. 공동경영주의 겸업 소득 인정하는 임시 개선방안 55

부록 63

참고문헌 85

제2장

<표 2-1>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및 평균 연령	9
<표 2-2> 농림어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과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0 1
<표 2-3> 농가의 영농 형태 변화	1 1
<표 2-4>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	1 1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추이	3 1
<표 2-6> 전국 지역농협 여성조합원 및 임원 현황	4 1
<표 2-7> 여성농업인의 농협 임원이 되기 어려운 사례	5 1

제4장

<표 4-1> 농업취업인구 중 여성 비중	7 3
<표 4-2> 연령별 신규 농업 취업자 수	8 3
<표 4-3> 연령별 농업 취업 인구	8 3
<표 4-4> 연령별 핵심 농업 종사자 수	8 3
<표 4-5> 가족경영협정의 주요 내용	2 4
<표 4-6>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비중	3 4
<표 4-7> 농업인단체 임원 중 여성 비율 추이	4 4
<표 4-8> 제4차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 중 지역·농산어촌·환경분야의 남녀 공동 참가 추진 참가 추진	44
<표 4-9>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과정	6 4
<표 4-10>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확립 단계	7 4
<표 4-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보장 분담금과 수당	9 4
<표 4-11> 배우자-협력자와 임금노동자 보험가입 비교	0 5

제5장

<표 5-1> 농가경제 조사 항목별 추이	45
<표 5-2>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	55
<표 5-3>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지급요건	66

제2장

<그림 2-1> 농림어업 비중	6
<그림 2-2> 농업생산성 지표와 농가경제 현황	6
<그림 2-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7
<그림 2-4> 농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와 비중	8
<그림 2-5> 농업에서 성별 노동투하량 변화	10

제3장

<그림 3-1> 농업경영체 신청서 양식	12
<그림 3-1>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취지와 활용 방향	30
<그림 3-2>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33

제4장

<그림 4-1> 일본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가 수	93
<그림 4-2> 일본 농업생산 관련사업의 사업종류별 농가 수	93
<그림 4-3> 여성 인정농업자 수 추이	104
<그림 4-4> 창업 활동의 추이	114
<그림 4-5> 창업 활동의 매출액(최근 1년간)	114
<그림 4-6>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수 추이	124

제5장

<그림 5-1> 농외 소득활동의 월평균 소득수준	65
----------------------------------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 무역 자유화의 영향으로 농업경영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소규모 농업경영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농업분야에 여성이 참여하는 농산물 가공과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 등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시간과 경영 참여의 정도가 증대하는 경향은 노동인력 뿐만 아니라 경영인력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 여성농업인의 경영 참여가 활발할수록 농업의 6차 산업과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등 새로운 경영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에서도 동일한 현상임.
- 우리나라는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양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공동경영주 제도를 2016년 3월에 도입했지만, 공동경영주로 가입하는 여성농업인 수는 매우 더디게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할 당시, 주로 농가의 가장인 남성이 자동으로 농업 경영주가 되고 그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은 농업 노동과 경영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무급 가족 노동자에 불과했음.
- 2016년 농업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도 경영주로 인정하는 공동경영주 제도를 도입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시 이를 표시하도록 함. 2016년 공동경영주 등록 당시 경영주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공동경영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주의 동의를 삭제하고 배우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선택하도록 서식을 개선함.
- 농업경영체(농가)의 경영주가 여성인 비율은 2015년 39만6천명(24.9%)에서 2019년 46만6천명(27.6%)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남.

○ 한편, 공동경영주 등록을 해도 경영주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경영주와 같은 혜택이 없음.

-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는 농업 이외의 겸업 활동을 수행해도 농업인 지위를 유지하지만, 공동경영주인 여성농업인은 겸업시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함.
- 여성농업인이 겸업을 하는 이유는 농업소득이 적기 때문임. 공동경영주가 겸업을 하며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면 여성농업인에게 부여되는 수혜(행복바우처, 농협 조합원 가입자격 요건 상실 등)에서 제외됨.
- 농업은 본래 계절적 실업이 존재하는 업종이므로 겸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피함. 또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은 농업 생산 이외에 가공·유통·판매를 겸하는 것이므로 겸업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직업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농업·농촌의 지속성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찾을 수 있음. 여성이 살기 좋은 곳은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곳임.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위향상, 문화 복지 확충 등 여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1.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에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함.

- 첫째,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여성농업인이 당면한 차별적 문제를 검토함.
- 둘째,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와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를 검토함. 특히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독일 사례와 비교함.
- 셋째,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가 성립한 과정을 살펴보고,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서 자격 기준과 그에 합당한 지위를 살펴봄.
- 넷째,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검토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내용

○ 농업구조와 여성농업인의 현황

- 농업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역할
-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 및 당면 문제

○ 여성농업인의 지위 관련 법·제도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 농업경영체등록제 도입 배경과 해외 사례 비교

○ 해외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사례

- 프랑스 및 일본 여성농업인의 자격과 정책수혜
- 국내 적용 시사점 도출

○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 여성농업인 단체, 현장 여성농업인의 의견 수렴
-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방안
- 공동경영주 등록 시 정책수혜 사업 발굴

2.2. 연구방법

○ 농가경제조사, 농업총조사, 통계청 등 자료 이용하여 여성농업인의 현황 분석

- 농업경영체 등록 원자료를 바탕으로 공동경영주 등록 현황 및 실태 분석

○ 선행연구 및 문헌 조사, 해외 사례 분석

- 농업경영체등록제도는 선행연구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이용하여 검토
- 해외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례는 일본과 프랑스의 여성농업인 정책 및 여성농업인의 지위 변화, 정책 수혜내용 등 분석

○ 현장 여성 농업인의 의견조사 및 분석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 조사를 실시하여 공동경영주 등록시 인센티브의 필요성 검토

2

농업 환경 변화와 여성농업인

1. 농업구조와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당면한 농업·농촌의 현실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므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위치를 우선 살펴보기로 함.

1.1. 단기간 농업해체와 농업노동력의 급격한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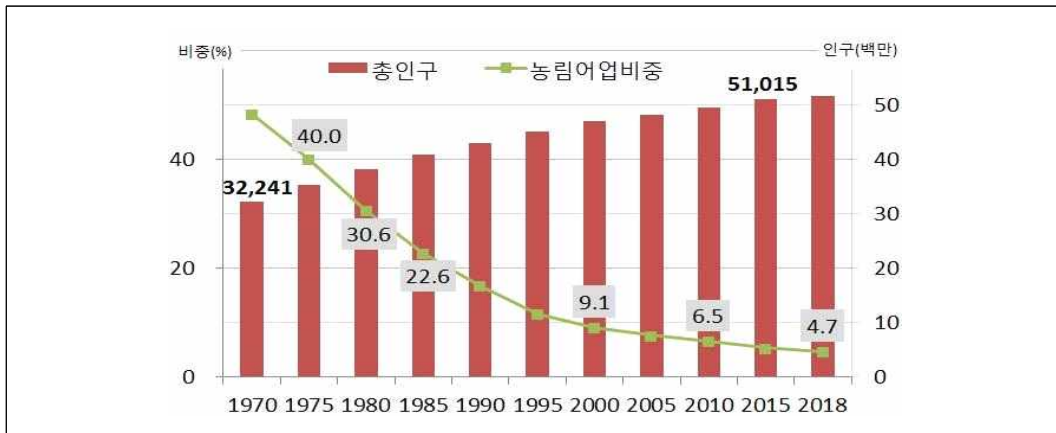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농업인구도 1975년 전체 인구의 40%인 1천 344만 명에서 2018년 4.7%인 232만 명으로 감소함(그림 2-1).

○ 농업 자본 투입액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농업총수입, 농업부가가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농업자본 투입액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농업부가가치의 정체 내지 감소 경향으로 농업 총수입은 2015년 이후 감소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그림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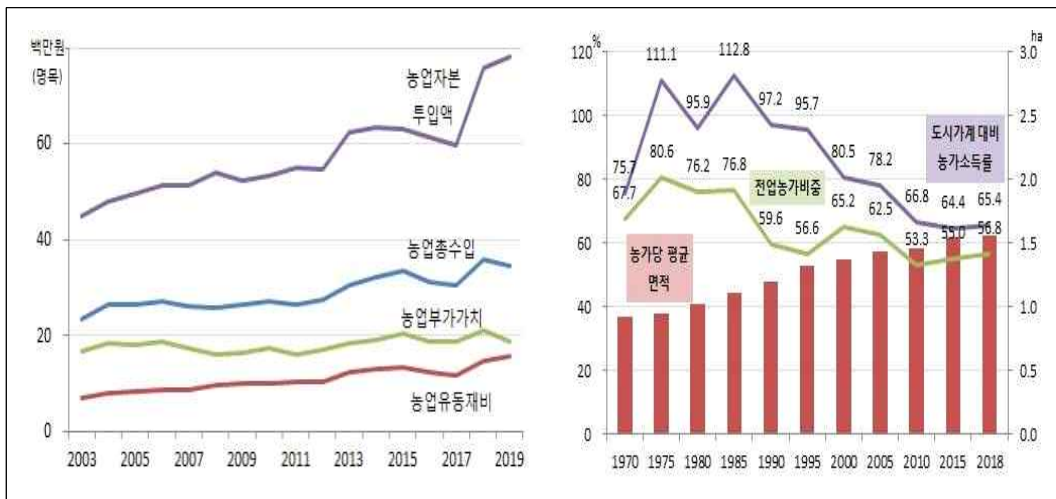
- 전업농가의 비중은 1990년 59.6%에서 2018년 56.8%로 여전히 높은 편임. 가계소득을 농업소득에 의존하는 농가 비율이 높다는 의미임.
- 도시가계 대비 농가소득률은 1990년 97.2%에서 2018년 65.4%로 크게 감소함. 농가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적 도농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림 2-1 농림어업 비중



자료: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그림 2-2 농업생산성 지표와 농가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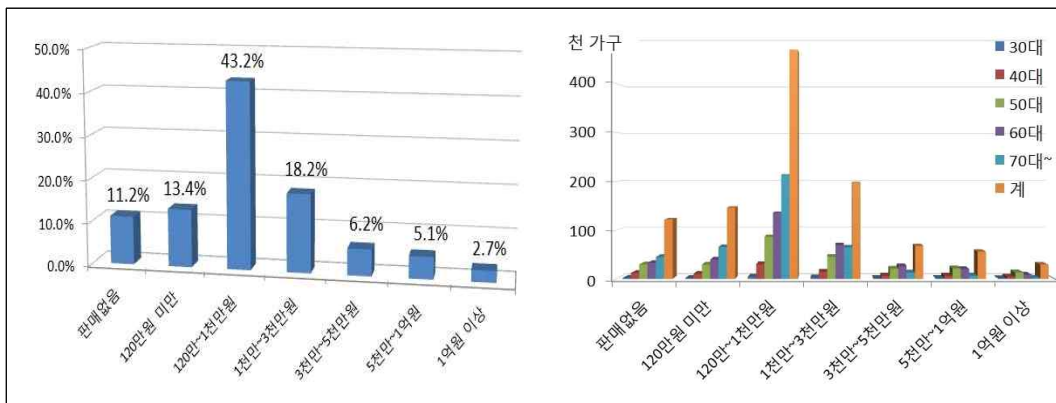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 농산물 판매가 없는 농가 11.2%, 연간 농산물 판매가 1천만 원 미만 56.6%, 1천~3천만 원 18.2%로,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농가가 85.9%에 이름.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이라면, 품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영비가 50%로 가정할 때 농업 순소득은 1,500만원 이하인 농가가 85.9%라는 의미임(그림 2-3).

그림 2-3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별 농가 분포



자료: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2015. 농림어업총조사.

1.2. 농업인의 고령화 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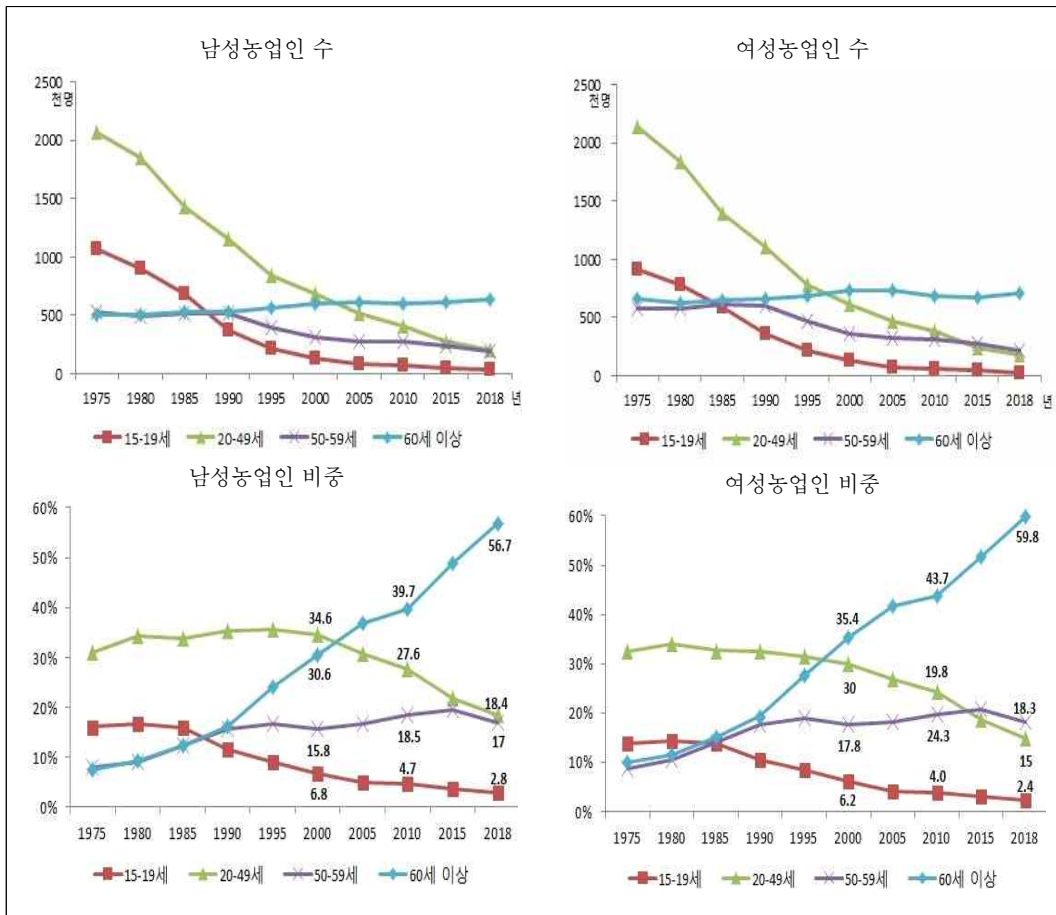
-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95년 458만명(총 인구 중 10.2%)에서 2018년 231만명(총 인구 중 4.5%)으로 지난 23년간 49.5% 감소함. 여성농업인도 1995년 248만명에서 2018년 119만명으로 52.2% 감소함.

- 농업의 중추적인 노동력인 20~49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60세 이상의 비중은 크게 증가함.

- 20~49세의 인구 비중은 2000년 남성농업인 34.6%, 여성농업인 35.4%였으나 2018년에 남성농업인은 18.4%, 여성농업인은 15%로 감소함.

- 반면, 60대 이상은 2000년 남성농업인 30.6%, 여성농업인 35.4%에서 2018년 남성 농업인 56.7%, 여성농업인 59.8%로 크게 증가해 전체 농업인구 중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음(그림 2-4).

그림 2-4 농가인구의 연령별 인구수와 비중



자료: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은퇴자로 간주하고 직업군에서 제외하고 사회보장의 권리를 부여함.

- 그러나 201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업인 비중은 남성농업인 43.7%, 여성농업인 45.6%로 고령화 현상이 심각함.

○ 지난 5년간 농가 경영주의 연령은 남성 64.1세에서 66.3세, 여성 69.9세에서 71.4세로 높아졌고, 여성 경영주의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5세 정도 높으며, 여성경영주는 89.4%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임(표 2-1).

－ 이는 청장년층이 산업 노동력으로 흡수됨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여성이 대체하고 있음을 의미함.

표 2-1 농가경영주 연령별 농가 및 평균 연령

단위: 천호(%), 세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평균 연령
2014	1,121 (100.0)	10 (0.9)	82 (7.3)	253 (22.6)	331 (29.5)	356 (31.8)	89 (7.9)	65.1
남자	925 (100.0)	9.7 (1.0)	77 (8.3)	231 (25.0)	282 (30.5)	262 (28.3)	63 (6.8)	64.1
여자	196 (100.0)	0.3 (0.2)	5 (2.6)	22 (11.2)	49 (25)	94 (48.0)	26 (13.3)	69.9
2019	1,007 (100.0)	7 (0.7)	45 (4.5)	170 (16.9)	324 (32.2)	318 (31.6)	144 (14.3)	67.2
남자	819 (100.0)	6.5 (0.8)	42 (5.1)	154 (18.8)	279 (34.1)	241 (29.4)	98 (12.0)	66.3
여자	188 (100.0)	0.5 (0.3)	3 (1.6)	16 (8.5)	45 (23.9)	77 (41.0)	46 (24.5)	71.4
증감	△114	△3	△37	△83	△7	△38	55	
증감률	△10.2	△30.0	△45.1	△32.8	△2.1	△10.7	61.8	

자료: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1.3.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 비중 증가

○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은 2015년 5.2%로 급격히 감소하지만,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참가율, 즉 농림어업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66%로 증가하고 일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2-2).

○ 농업에서 여성의 노동비중은 1975년 33.3%에서 2015년 48.1%로 증가함(그림2-5).

－ 특히 품앗이 노동은 과거에는 남성의 일에서 최근에는 여성의 주된 노동형태로서 여

성노동의 단순노동화, 주변화 현상이며 농업이 여성 노동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표 2-2 농림어업 취업자의 성별 구성과 경제활동 참가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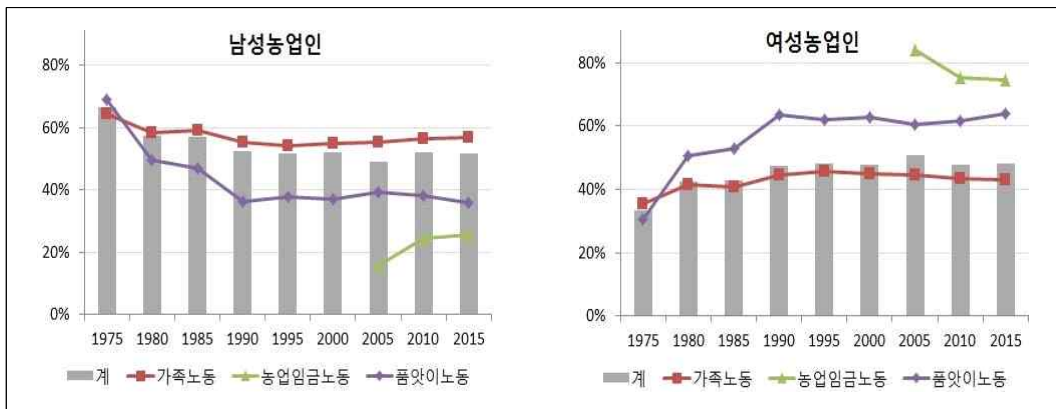
단위: %

	농림어업비중	농림어업 취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여성	여성	여성농업인
1975	45.7	58.6	41.4	40.4	
1980	34.0	56.3	43.7	42.8	
1985	24.9	56.6	43.4	41.9	
1990	17.9	53.8	46.2	47.0	
1995	11.8	51.7	48.3	48.4	
2000	10.7	52.5	47.5	48.8	
2005	7.9	53.7	46.3	50.3	67.5
2010	6.7	56.7	43.3	49.4	63.6
2015	5.2	57.9	42.1	51.9	65.9
2019	5.1	59.5	40.5	53.5	

주: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난 1주간(1975-1995)/4주간(2000-) 1시간 유급일종사자, 여성농업인은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 지난 1년간 농업활동 종사자임.

자료: 통계청, 각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

그림 2-5 농업에서 성별 노동투하량 변화



주: 1975-2000년은 고용노동 남녀 비중 통계 없음.

자료: 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통계연보

1.4. 영농형태 변화와 여성농업인의 노동 참여 증가

○ 농가의 주요 생산 작목 분석 결과, 논벼의 비중은 1995년 54.9%에서 2018년 37.9%로 17% 감소하지만, 과수와 채소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표 2-3).

－ 농가의 재배품목이 변하게 된 것은 농업에서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농업 근대화 정책의 영향임. 농가는 수익성이 낮은 논벼를 줄이고 노동 및 농지 단위 수익성 비율이 높은 환금성 작물로 전환함.

－ 과거에는 농가마다 쌀을 중심으로 채소, 콩 등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였지만, 요즘은 농가마다 주요 품목 1~2종류만을 전문적으로 규모화 하여 생산함.

표 2-3 농가의 영농 형태 변화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5	2018
논벼	54.9	61.1	50.9	논벼	44.4	41.7	37.9
과수	9.6	11.1	11.4	과수	14.4	15.8	16.9
채소	16.4	11.1	18.1	채소·산나물	19.0	18.2	25.0
특용작물	3.0	2.9	2.2	특용작물·버섯	2.4	3.6	3.9
화훼	0.7	0.6	0.8	화초·관상작물	1.6	1.3	1.1
일반발작물	4.7	7.1	9.9	식량작물	9.9	12.7	8.7
축산	10.4	5.6	6.5	축산	6.9	4.9	5.2
기타	0.4	0.4	0.3	기타작물	0.8	0.9	0.5
				약용작물	0.6	0.9	0.8

주: 2010년부터 항목이 수정됨.

자료: 농식품부,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농가수 기준.

표 2-4 영농형태별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

단위: %, 명

	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표본수
논벼	10.1	42.2	29.7	17.9	661
과수	8	39.7	32	18.1	256
노지채소	7.1	27.3	23.9	41.1	381
시설채소	6.7	56.3	30.8	5	111
화훼/특작	2.7	34	36.1	27.2	81
전작	9.9	39.8	18.4	31.1	132
축산	5.6	27.3	49.7	17.3	13

자료: 안석 외, 2019.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편, 논벼는 기계를 이용하는 기계화율이 95% 이상이지만 채소를 비롯한 특용작물, 일반 밭작물은 기계화율이 매우 낮음. 기계화율이 낮은 품목의 생산 확대는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
 - 그 결과 여성농업인의 농사일 비중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노지채소 65%, 화훼 및 특용작물 63.3%, 전작 49.5%로 높게 나타남(표 2-4).

2. 여성농업인의 지위 현황과 당면문제

2.1. 여성농업인의 위치에 따른 지위

- 경제활동을 하는 농업인의 지위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주, 경영주의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 3가지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¹⁾
 -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함.
 -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함.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를 말함.
- 현행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은 농가를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 구분하고 있음.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농업경영주는 ‘경영주인 농업경영인’으로 표기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¹⁾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검토함.

○ 공동경영주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16년에 신규 도입된 제도임.

- 2018년 1월에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등록시 경영주의 동의 조항 삭제하여 선택자유성 강화로 농업경영체법 시행규칙에 서식을 개선함.
- 최근 5년간 농업경영주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경영주 외 농업인은 감소하는 추세임. 경영주는 2015년 1,590천 명에서 2018년 1,659천 명, 2019년 1,686천 명으로 증가하지만 경영주 외 농업인은 2015년 993천 명에서 2018년 784천 명, 2019년 761천 명으로 감소함. 경영주의 증가 요인은 청년 및 여성농, 타 산업에서 전환(귀농) 등 신규 진입 증가로 추정됨.

○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동경영주 등록인원은 2017년 23천명에서 2018년 27천명, 2020년 6월 말 3만 8969명임.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의 6.9%만이 공동경영주에 등록된 상태임(표 2-5).

- 배우자 중 공동경영주의 등록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제도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규정상의 불합리 또는 실효성이 낮기 때문임. 즉,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도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공동경영주 등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표 2-5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추이

		농업인 (A+B+C)	경영주 (A)	경영주 외 농업인(B)	경영주 외 농업인 중 배우자	공동경영주 (C)	배우자 중 공동경영주 비율
2018년	계	2,443,567	1,659,100	757,643	666,406	26,824	4
	여성	1,122,964	448,486	650,529	608,596	23,949	3.9
	비율	46	27	85.9	91.3	89.3	
2019년	계	2,446,568	1,686,068	724,575	644,280	35,925	5.6
	여성	1,119,590	465,683	622,236	587,169	31,671	5.4
	비율	45.8	27.6	85.9	91.1	88.2	
2020년 6월	계	2,475,612	1,721,229	710,138	641,771	44,245	6.9
	여성	1,131,633	483,104	609,560	583,029	38,969	6.7
	비율	45.7	28.1	85.8	90.8	88.1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

2.2. 지역농협 여성조합원과 임원 현황

○ 2019년 말 기준, 전국 1,118개 농협의 조합원은 209만9,167명이고, 여성조합원은 68만4,182명으로 전체의 32.6%를 차지함.

- 1988년부터 여성농업인이 농·축협 조합원으로 가입이 허용됐고, 1994년 복수조합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여성조합원 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과 비교하면 크게 열세임.
- 지역농협 임원은 전국 1만 2,712명이며 여성임원은 1,094명으로 8.6%에 불과함.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은 1,118명이고 이 중 단 8명(0.7%)만 여성조합장임.

표 2-6 전국 지역농협 여성조합원 및 임원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조합 수(개소)	1,134	1,131	1,131	1,122	1,118
조합원 수(천명)	2,292	2,246	2,216	2,146	2,099
여성조합원 수(천명)	705	701	702	691	684
여성 비율(%)	30.8	31.2	31.7	32.0	32.6
전체 임원 수(명)	12,959	13,017	13,263	13,080	12,712
여성 임원 수(명)	584	613	803	1,097	1,094
여성 비율	4.5	4.7	6.0	8.3	8.6

주: 연도말 실적임.

자료: 자료: 한국농정신문, 2020. 07. 07. “지역농협 유리천장, 얼마나 찼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79>)

○ 현재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농업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복수조합원제도가 승인되었지만, 지역축협과 품목별·업종별 농협의 경우 가족원은 복수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

- 지역농협에서 남편이 지역농협 조합원일 경우 그 부인도 해당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지역축협과 품목별·업종별 농협은 복수조합원 제도가 없어 여성조합원 비율이 현저히 낮음.
- 2020년 1월말 기준 지역농협의 여성조합원 비율은 33.8%(65만9535명)에 이르면, 지역축협은 17.5%(1만7648명), 원예농협은 15.4%(5615명), 인삼농협은 18%(2218명)에 불과함.²⁾

표 2-7 여성농업인의 농협 임원이 되기 어려운 사례

- 농협이사를 희망했던 여성농업인 B씨는 “부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경제사업 실적이 1,000만원이 넘고, 금융거래금액도 있어 임원 신청자격이 되는 줄 알았다”면서 “그렇지만 남편이 아닌 제 이름 앞으로 경제사업 실적 등이 따로 있어야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 출마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 경남에 있는 이 농협은 75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실적을 임원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두고 있다. 나머지 예적금 평균 2,000만원 이상, 대출금 평균 1,500만원 이상, 보험수수료 수익 8만원 이상 중에서는 한개만 충족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 여성조합원 C씨는 “부부가 농사를 같이 짓지만 경영권을 남편이 쥐고 있어 농협의 경제사업 이용실적 등은 모두 남편 앞으로 돼 있다”면서 “부부가 금융거래나 경제사업 이용금액을 각각의 명의로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협 임원은 꿈도 못 꾸다”고 하소연했다.
- 여성농업인 D씨는 “농협에서 다른 지역보다 조합원이 많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1가구당 1명’으로 한정해 여성농업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했다”면서 “남편이 탈퇴하거나 사망해 승계하지 않는 한 여성농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데 임원은 무슨 임원이냐”고 반문했다.
- 여성농업인 E씨는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싶지만 조합원 평균 출자금을 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워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출자금 한도를 낮춰 능력 있는 여성들이 조합원에 가입하도록 노력하면 여성임원이 늘고 조합경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4년간 농협 이사로 활동했던 한 여성조합원은 “농촌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서상 여성이 앞에 나서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 여성이 임원으로 출마하더라도 남성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임원이 되더라도 대다수가 남성이라 여성의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농민신문. 2016.05.14. “농협, 생각해봅시다 <1부>농민, 농협을 말한다(7)여성조합원 임원은 ‘하늘의 별따기’”.
(<https://www.nongmin.com/plan/PLN/SRS/78039/view>)

○ 여성농업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남.³⁾

- 첫째, 지역농협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신규 가입자에게 출자비용을 너무 높게 요구하거나 조합의 정관을 달리해 여성의 진입을 막는 장치가 지역농협마다 다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대응도 지역농협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단위 조직력이 강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나타남.
- 둘째, 다른 하나는 조합원으로 가입해도 ‘빛만 지고(실효성 문제) 농협은 빛내는 곳(농가부채)으로 인식되는 곳일 뿐, 농업인을 위해 뭔가를 도모하는 조직이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이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함.

○ 한편, 남성중심의 농촌문화가 농협 이사결정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어 여성 임원의 진입장벽이 높음.

2) 농민신문, ‘지역축협·품목농협도 복수조합원제 도입하도록 최선’ 기사 발췌, 2020.06.08

3) 한국농정신문, ‘여성농민운동 미완의 제도개혁과제, 농협,’기사 발췌. 2019.08.11

- 실질적인 벽과 심리적인 벽, 그리고 현실적으로 농협의 활동이 여성농업인을 위한 실익이 없다는 점이 맞물려 여성농업인의 농협 임원 진출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됨.

○ 농협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인 곳은 여성임원(이사·감사)을 1명 이상 선출하게 돼 있음.

- 여성조합원이 30% 이상인 농협은 750개소(67.1%)이며, 여성 이사가 있는 농협은 832개소(74.4%), 여성이사가 없는 지역농협은 286개소(25.6%)임.

- 여성이 선거에서 임원으로 선출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농협법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선거를 거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 형식으로 여성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진의지가 담겨야 함.

3

여성농업인의 지위 관련 법·제도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성평등 및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해도 경영주와 동일한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본 장은 현행 농업관련 법에서 공동경영주에 대한 법적 지위와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해 검토함.

1. ‘농업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⁴⁾

1.1. ‘농업인’에 대한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3조⁵⁾ 제2호는 ‘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함.

4) 이영근 변호사의 자문으로 작성됨.

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기본법 시행령 제3조⁶⁾ 제1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음.
- 또한 기본법 제5조⁷⁾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다른 법령 내용 중에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그 의미는 해당 법령 내에 다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 정의규정에 따른 의미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다만, 제목에 ‘농업인’이 포함된 유일한 법령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농업인’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으로 정의하는바,⁸⁾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따르면서 다만 그 범위만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따르거나 이를 인용하여 다른 정의규정을 둔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업인 부

6)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7)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8) 제2조 제1호에서 “농업인등”을 정의하면서 그 가목에서 해당되는 ‘농업인’을, 그 나목에서 해당되는 ‘농업법인’을 각각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에 의한 ‘농업인’은 가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다수의 법률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있음.

- 「농지법」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제2조 제2호⁹⁾: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 지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도 위 농지법상 농업인의 정의규정을 인용하여 농업인을 정의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법」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채 제19조 제4항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¹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그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기본법 시행령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¹⁾ 그리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¹²⁾은 “농어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그 중 ‘농업인’을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농업인’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¹³⁾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이 규정은 기본법 제5조와 관계를 고려할 때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11) 제4조(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3. 누에씨 0.5상자[2만립(粒) 기준상자]분 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4. 별표 1에 따른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대가축 소 2마리, 중가축
5.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농업인의 법적 지위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부 예외는 있으나, 기본법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법령에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을 요함.

－ 앞의 각종 법령은 이러한 ‘농업인’ 등을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음. 그러므로 다소 포괄적으로나마 ‘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자면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본법 시행령상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앞서 본 기본법 및 각종 법령에 따라서 가진 권리의무의 총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에 대해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거나 ‘농업인’이라는 용어를 기본법상 ‘농업인’과 별도의 의미로 규율하고 있고, 일부 다른 법령들 또한 위 별도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따르거나 이를 원용하고 있음.

1.3. ‘여성농업인’의 정의와 공동경영주¹⁴⁾로서 법적 지위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¹⁵⁾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면서 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고 정의함. 위 규정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은 기본법상 ‘농업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특별히 법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음.¹⁶⁾

14) 참고로 ‘공동농업경영체’에 관한 규정은 개인인 농업인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 검토에서는 논외로 합니다. 농업경영체법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16) 그런데 정작 기본법 제3조제2호는 농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일 뿐이므로 위 ‘여성농업인’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정의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다만 위 규정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

-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1호17)도 농업인의 정의를 기본법의 정의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이하 ‘별지 서식’)에 아래와 같이 공동경영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그림 3-1 농업경영체 신청서 양식

1. 일반현황									
①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마을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 형태		[] 전업 []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 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 ×)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전업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전업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전 생애 농업에 종사 [] 전업 [] 다른 산업에서 전환 []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의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 반대하는 경우 ×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신청서 작성방법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중략)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이하 생략)

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 ‘농어업경영체법 별지 서식’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동경영주’ 개념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음.

른 농업인 중 여성을 말한다.’라고 선해할 수는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① 공동경영주는 경영주 이외의 농업인이다. ②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배우자이다.
- ③ 공동경영주는 위 ①항 및 ②항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희망하여 위 별지에 기재함으로서 인정된다.

○ 그런데 기본법 및 농업·농촌 관련 법령상 원칙적으로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므로, 공동경영주는 그 중 제1호의 경작자(“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또는 제3호(“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¹⁸⁾

- 공동경영주가 제1호 경작자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소유자로부터 위탁경영(농지법 제9조¹⁹⁾ 제6호: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 해당됨. 그 이유는 농지법상 공동경영주가 해당 농지 소유자인 배우자로부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임(제23조²⁰⁾ 참조).²¹⁾

18) 경영자가 아니므로 제1호 중 경영하는 사람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고, 고용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제4호 및 제5호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19)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20)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

-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8조²²⁾ 제2항은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함. 그러므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하는 것을 위 제6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음.²³⁾

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21) 현실적으로 해당 가능성이 낮은 다른 경우(농지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 등)에 대한 검토는 생략함. 참고로 공동경영주 자신이 소유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경작’ 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해당되므로, 그는 ‘공동경영주’가 아니라 ‘경영주’가 됨.

22)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①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 8. 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7.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수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23) 다만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농지법 제9조제6호)에 아무런 위임의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공동경영주는 그 성격상 위 시행령 규정 중 제3호(“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될 수밖에 없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제3호²⁴⁾에 따르면 공동경영주는 위 시행령 규정 중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

－ 위 고시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동경영주는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불과함.

○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며,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를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위 규정,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²⁵⁾을 살펴볼 때, 농업경영체는 ‘농업을 경영

24)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시행 2019. 2. 8.]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호, 2019. 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농촌(준농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 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의 직장가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단, 18세 미만 제외)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하는 자'를 의미하고 위 공동경영주에 대한 정보는 위 농업경영체가 등록해야 하는 정보 중 일부(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공동경영주는 명칭은 비록 '공동경영주'로 되어 있으나 '농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불과함. 그 배우자가 위 시행령 규정 중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일 뿐임.

－ '공동경영주'는 상위법령에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경영'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여 만든 용어일 뿐 그 진정한 의미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거리가 있음.

－ 따라서 기본법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상 '공동경영주'로서 '여성농업인'은 별다른 규범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

1.4. 다양한 공동 농업경영 제도

○ 민법은 부부에게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만 대리권을 인정²⁶⁾²⁷⁾하고 각자 자신의 재산을 소유, 관리, 사용 및 수익²⁸⁾하므로, 부부가 농업을 각자 경영 또는 공동 경영인지는 분

25)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4. 28.>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정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농업인에 관한 정보 (각호 생략)

2. 농업인과 같이 살고 있는 세대원에 관한 정보

(중략) 10. 그 밖에 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6)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 대법원은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28)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명히 구별되어야 함.

○ 공동경영의 대표적인 형태로 민법상 ‘조합’을 예로 들 수 있음.

- 민법 제703조²⁹⁾ 제1항은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
- 부부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 등으로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서 농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할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조합계약이 성립함.
- 따라서 이러한 농업의 공동경영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부터 제724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됨.

○ 한편 ‘내적 조합’을 통한 농업 공동경영이 있음.

- ‘내적 조합’은 당사자간의 내적 관계는 조합관계이지만, 대외적 행위는 조합원 1인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 명의로 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형태의 법률관계를 말함.
- 대법원은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관하여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자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음.³⁰⁾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개정 1977. 12. 31.>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29)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30) 대법원은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고서 갑은 출자금을 지급하고 을은 공장의 임대보증금과 시설 등을 책임지며 그 사업은 을 명의로 하여 그의 책임하에 공장을 경영하고 이익금은 공장내에 유보하며 을은 갑과 합의한 급여를 매월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을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그의 명의로 위 공장을 경영하여 왔다면, 이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일종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조합원들의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을이 대외적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원인 갑을 대리할 필요없이 자기명의로 단독으로 하고 이를 위한 권리의무가 을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통상의 조합과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을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711조 내지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함

- 그러나 조합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대하여서는 외부관계에 대한 이론에 영향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됨.

○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도 있을 수 있음.

- 상법 제78조는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
- 이 익명조합은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계약관계이나 출자자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대외적으로는 영업자의 개인기업일 뿐임. 따라서 조합재산도 없고 조합대표도 없으므로 민법상 조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³¹⁾

○ 그밖에 ‘지분적 조합’, ‘재산 없는 조합’ 등의 형태도 있을 수 있음.

- 조합계약 체결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보유하도록 합의할 수 있음. 이 경우 합유재산이 없는 조합이 유효하게 생겨날 수 있는데, 이를 지분적 조합이라고 함.
- 어떤 조합원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을 조합의 경제적 기초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때에도 재산 없는 조합이 생기게 됨.
- 또한 재산 없이 노무(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부작위를 출자한 경우에도 역시 재산 없는 조합이 성립할 수 있음.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그 외의 다양한 모습의 조합이 존재할 수 있음.³²⁾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31) 익명조합의 외부관계에 대하여는 상법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익명조합원이 영업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진다면 내부적으로 공동사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위 언급한 ‘내적 조합’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32) 이상의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민법주해XVI, 22면 이하 참조

1.5. 현행 공동경영주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

- 부부 간 농업 공동경영의 모습으로 ‘조합’, ‘내적 조합’, ‘익명조합’, ‘지분적 조합’, ‘재산 없는 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본법, 농업경영체법 등 각종 법령들은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 현행 기본법, 농업경영체법은 ‘농업을 경영하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을 대별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반영·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 예를 들면, 부부가 농지를 합유³³⁾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공유³⁴⁾하여 공동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지분적 조합’관계로서 부부가 모두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
- 나아가 농지가 어느 일방 배우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농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를 ‘내적 조합’(‘익명조합’)으로 보아 역시 부부가 모두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
 - － 일방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역시 ‘재산 없는 조합’이면서 동시에 ‘내적 조합’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33)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4)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그러나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와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규정 등은 부부 사이의 위와 같은 다양한 공동경영의 모습 및 그에 따른 실제적인 권리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목적 및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유형을 세분화하여 등록하게 하거나 필요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 받지 못한 채 등록을 남용할 경우 오히려 실무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통계분석, 현장조사, 설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부 공동경영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위 공동경영의 유형을 분류하여 이를 등록하게 해야 함.

○ 또한 부부가 농업을 공동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쌍방이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대외적으로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함.³⁵⁾

－ 그러나 ‘내적 조합’(‘익명조합’)의 경우에는 비록 내부적으로 부부가 농업을 공동경영하는 관계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대외적으로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대외적으로 권리를 가지도록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는 없음.

－ 따라서 ‘내적 조합’(‘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대외관계와 대내관계를 동일하게 혹은 다르게 규율할 것인지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5)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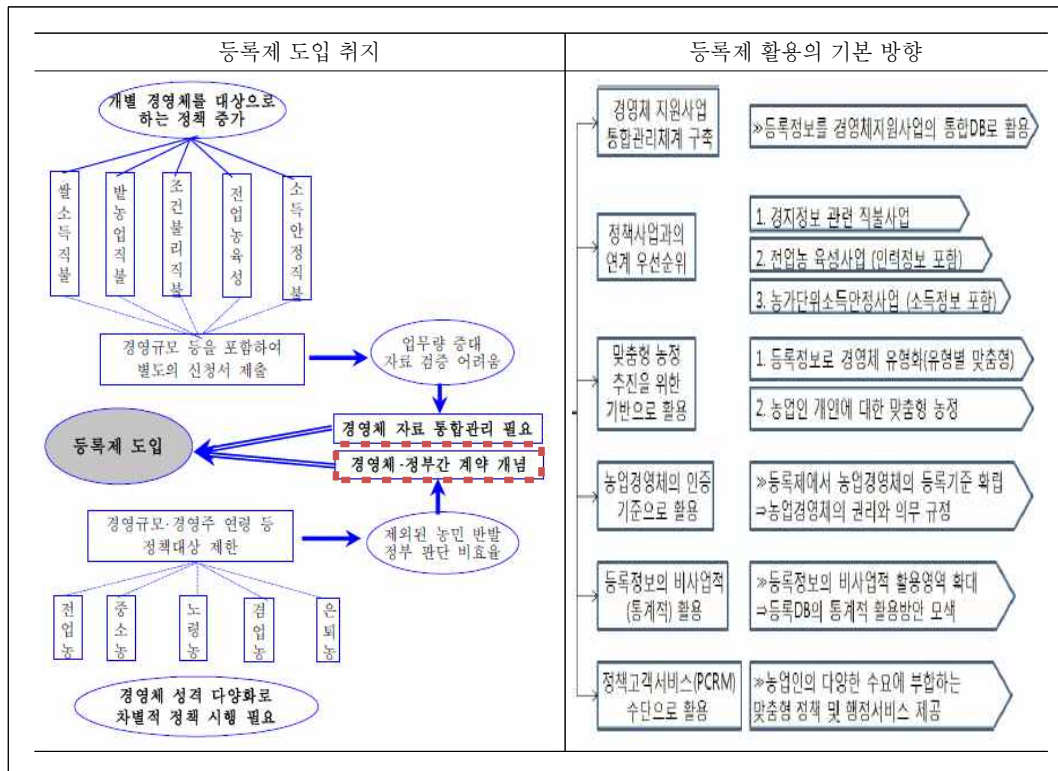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2.1. 농업경영체 등록의 취지

-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부터 시행됨.
 - 경영체의 기본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맞춤형 정책 추진하고자 함.
 - 경영체의 경영자료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림사업 정책사업 신청에서 중복과 분산 최소화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음.

그림 3-1 농업경영체 등록제 도입 취지와 활용 방향



자료: 김수석 외.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KREIL..

- 농업인 기준은 ‘농어업경영체법’상 농업 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활용하며 농업인에 해당 되면 농업·농촌 관련 각종 보조·융자사업 지원 신청과 조세 감면 등이 가능함.

- 농업인은 앞 절의 주 6 기본법 제3조 제2호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함.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함으로써 경영체와 정부 간 계약 개념이 성립함.

- 이 때, 정부와 경영체 간의 계약은 다음과 같은 공법 및 사법상 지위에 해당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관계로 이해할 수 있음.

- 법적 지위는 권리의무의 총체로서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가 있음.
 - 공법상 지위: 헌법에서 위임한 주어진 권리(예: 기본권), 지위나 권리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권리와 이익)
 - 사법상 지위: 당사자의 계약체결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말함.
- 또한 법적 효력의 유무에 따라 법적 지위가 결정되기도 함.
 - 법률 관계: 법적 효력이 있는 관계, 상대방에게 법적 구속을 지을 수 있는 관계
 - 호의 관계: 도덕적, 윤리적 구속이 있지만, 법적 구속이 없는 관계
-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논의할 때도, 공법상 지위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이 필요함.

○ 또한 국민 개개인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이지만, 동시에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통치 대상이기도 함.

-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음.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이 국내 농업의 농업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며 국민의 의무를 면제받고 있음. 즉, 농업인 대부분(99% 이상)은 농업소득을 비과세임.

농업 소득 비과세의 기준

-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수입금액=총소득-경비)
 -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모종), 과실, 음료용 및 향신료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 농가부업소득
 -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 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총소득-경비)
- 농가부업 규모의 축산업(소 50마리, 돼지 7백 마리, 닭 15천 수 등)
- 그 밖에 비과세되는 소득
 - 전통주 제조 소득(농어촌 지역에서 제조한 연 12백만 원 이하 소득)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 임대소득 등)
 -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백만 원 이하 소득)

-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경영체와 정부 간 계약의 법적 관계라고 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리의무가 분명해야 함.
- 그런데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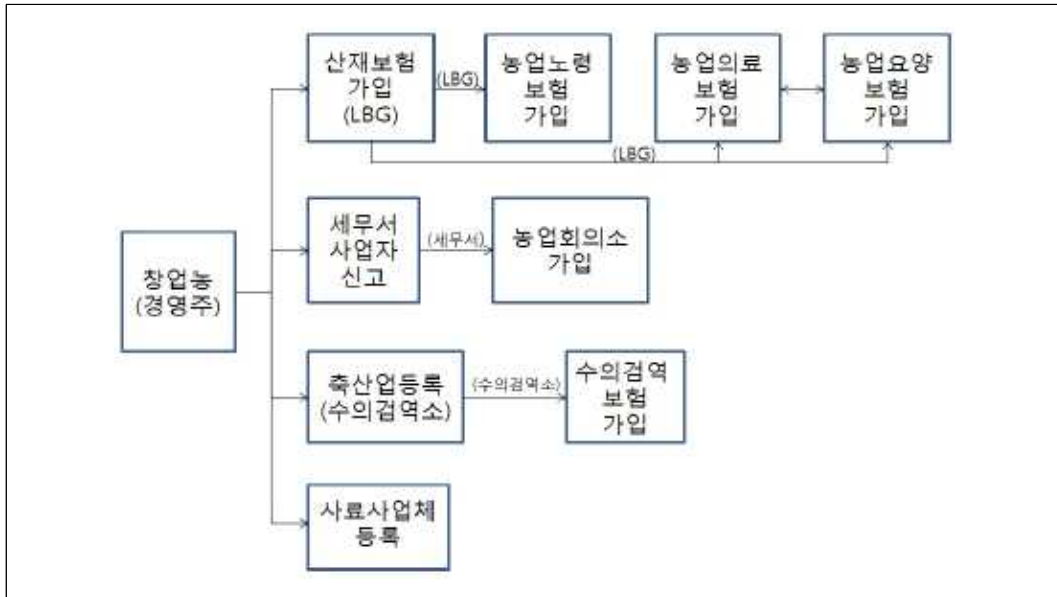
2.2.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

○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을 벤치마킹 함. 독일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독일 농업경영체의 등록의 목적

- 첫째, 다른 산업경영체와 조세행정상으로 구분하기 위한 조세법의 농업경영체
 - ▶ 의무: 각종 사회보험 가입을 포함한 의무적으로 등록 절차 필요
 -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 농지 포함 농장 가치 평가, 과세대상 등록
 -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 시 요구되는 최소 영농규모
예: 8ha 경종농업, 2.2ha 원예특작, 양 240마리(지역별 차이 있음)
 - ▶ 권리: 농업용 건축을 할수 있는 권리, 세제 감면 혜택의 대상
 - 소득세: 연간 307백 유로(한화 약 4천만원) 미만 시 670유로(한화 87만원) 공제, 부합산 연간 614백 유로(약 8천만원) 미만 시 1340유로 면제
 - 산업세(지방세) 면제
 - 토지세(지방세) 수익가치로 산정되는 통합가치로 부과
 - 상속 및 증여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 후 10년 동안 직접 사용은 면세
 - 농업 부가가치세: 【정규 과세방식】 농산물·생필품 7%(일반 상품 19%), 농가 구입품의 부가가치세와 판매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의 차액을 정산, 【평균 과세방식】 판매 농산물에 10.7% 부가가치세 적용함. 단, 소규모 농업경영체(전년 매출 175백유로(약 23백만원) 미만, 당해연도 5천유로(65백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사업자는 면제

그림 3-2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자료: 저자 작성.

- 둘째, 농업정책 지원을 위한 지원법의 농업경영체 등록임. 등록여부를 개별경영체가 결정하는 임의 등록이지만 정책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임. 특히 EU 단 일직불제의 수령 위해 농지의 이용 정보 등록(통합관리통제시스템 등록)이 필요함.

○ 독일 조세법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지향하는 기본원칙 및 핵심 내용

- 1885년 농업산재보험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도입된 시점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도입됨.
- 농업경영체와 정부 간 계약의 효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둠. ①농림업을 특수산업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특례 부여, ②다양한 지원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함(최소영농규모가 영세농 수준 이상으로 설정), ③지속가능한 건전한 농업 육성 지원의 정책적 의지 표명(밀식사육 기업경영, 자본회사적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그러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핵심 내용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사업체로서 농업경영체 개념이 명확함, ②최소 영농규모 이상의 생산에 참여해야 농업경영체로 인정함, ③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임, ④조세관련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납부함.

2.3.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의 한계와 개선 방안

-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기준이 지나치게 간단한 반면, 농업인의 자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 농업인(개인)과 구분되는 농업경영체(사업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임.
 -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물적·인적 조건 구비한 농업경영체의 경우에 한해 경영체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음.
 - 그 이유는 농업소득에 대한 비과세로 인해 사업체의 근거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임. 즉, 농업 소득세 도입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와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 등으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사업체의 근거가 애매함.
 - 농업경영체 인증요건에 조세 관련 사업자 등록이 포함되어야 일반 사업체와 동등하게 사업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아직 농업부문 조세가 정비되지 못한 상태임.
- 농업인이 되는 조건(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1천㎡ 농지를 경작·재배,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등) 최소 영농규모가 세분화, 체계화 되지 못함.
 - 이에 따라 농업관련 사회보험 가입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는 의무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고용노동력(상시고용 5인 이상) 이용의 농업경영체만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됨.
- 가족농³⁶⁾ 농업경영체는 아직까지 사업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지 못한 현실이고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은 의무제가 아니었음.
 - 가족노동을 이용하는 경우, 가족 종사자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사례는 거의 없음. 사

36) 가족농에 의한 경영은 고용노동에 의해 행해지는 자본주의적 경영과 대비되는 말이다. 농번기에는 고용노동이 약간 이용될 수 있지만 경영에 이용되는 노동력은 주로 자가공급에 의하며, 고용노동은 종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요건이다. 따라서 자가노동(自家勞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규모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농은 주로 소농경영에 속한다. 가족농 경영의 목표는 자본주의적 경영과 같은 가치증식을 위한 이윤획득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생활이 최저수준만이라도 유지되면 경영은 계속되는 강인성을 지닌다. 가족농 경영이 각국에서 가장 보편적 존재로 되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가족농의 강인성 때문이다. 출처 : 다음백과(<https://100.daum.net/>)

업체의 비용과 수익은 자본주의 경영의 기본 요소이지만 가족농의 경영 목표는 가족 생활이 최저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영은 계속 유지됨.

- 국내 농업정책의 대부분은 규모화 전업농이 대상이므로 농업인의 70~80% 이상인 중소 가족농은 농업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요성이 낮았음.

○ 다만, 2020년 공익형 직불제 시행과 각 지자체의 농민수당 등이 농업경영체 등록자에게 지급되므로 농업인의 경우 경영체 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음.

- 국내 농업경영체 등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농정은 그 대상을 농업경영체로 분명한 설정이 필요함.
- 농업소득의 비과세는 전근대적 요소로서 농업인의 인식을 퇴화시키는 요인임. 농업경영체가 사업체로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체와 동등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므로 일반 사업체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농업 부문의 전근대적 법·제도의 일괄적 정비가 필요함.

3. 여성농업인 관련 법·제도의 시사점

○ 농업 관련 법률 상,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자격은 ‘경영주 외 농업인’에 불과함.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농업 관련 법률에서는 별다른 규범적 의미가 없음. 즉, 경영주의 권리의무가 없음.

○ 국내 농가가 110만 가구인데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체는 160만 개소 이상임. 이는 농가 구성원 중 경영주 1명 이외 또 다른 1명 이상,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이 별도의 경영체로 분리하여 경영주로 등록한 것임.

- 여성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에 등록 가능한 공동경영주 지위가 있지만 실제 권리가 경영주와 동일하지 않다보니 공동경영주가 아니라 경영주로 등록하는 실정임.
- 현재 공동경영주 등록은 경영주의 동의없이 등록 가능하고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언급만하면 검증도 없이 등록이 가능함.

○ 결국,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은 ‘경영주’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큰 실효성이 없는 상태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경영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내용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별도 조항이 필요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법률’(농업경영체법)은 경영체에 관한 내용이므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의 자격 및 권리의무를 포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농업경영체법은 가족농을 포함한 농가 전체를 농업경영체로 간주하므로 경영체 구성원 간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는 있음.³⁷⁾

³⁷⁾ 사실 국내 농업경영체법에서 경영체의 권리(정책의 지원 대상)와 의무(조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동시에 필요함.

4

해외 여성농업인 사례

1. 일본

1.1. 여성농업인의 위치와 역할

○ 여성은 농업 취업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농업의 담당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신규 농업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임.
- 핵심 농업 종사자는 50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음.

표 4-1 농업취업인구 중 여성 비중

단위: %, 천명

	1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 취업인구	4,140	3,891	3,353	2,606	2,097	21,922	1,816	1,753	1,681
여성	2,372	2,171	1,788	1,300	1,009	900	849	808	764
여성비중	57.3	55.8	53.3	49.9	48.1	46.8	46.8	46.1	45.4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표 4-2 연령별 신규 농업 취업자 수

단위: %, 명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총 인구
신규 농업취업자	12,810	6,490	7,390	12,290	16,840	55,810
여성	3,240	1,740	1,910	2,980	3,550	13,420
여성 비중	25.3	26.8	25.8	24.2	21.1	24.0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표 4-3 연령별 농업 취업 인구

단위: %, 천명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총 인구
농업 취업인구	93	90	144	621	734	1,681
여성	30	36	72	301	326	764
여성 비중	31.8	39.8	49.9	48.4	44.5	45.4

주: 농업 취업 인구는 농업종사자 중 '농업에만 종사한 세대원' 및 '농업과 겸업의 쌍방에 종사했지만, 농업 종사 기간이 많은 세대원'의 것을 말함.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표 4-4 연령별 핵심 농업 종사자 수

단위: %, 천명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총 인구
핵심 농업 종사자	68.1	79.7	128.7	537.4	590.1	1404.1
여성	16.6	28	57.5	230.9	228.9	562
여성 비중	24.4	35.1	44.7	43.0	38.8	40.0

주: 핵심 농업 종사자는 평소 자영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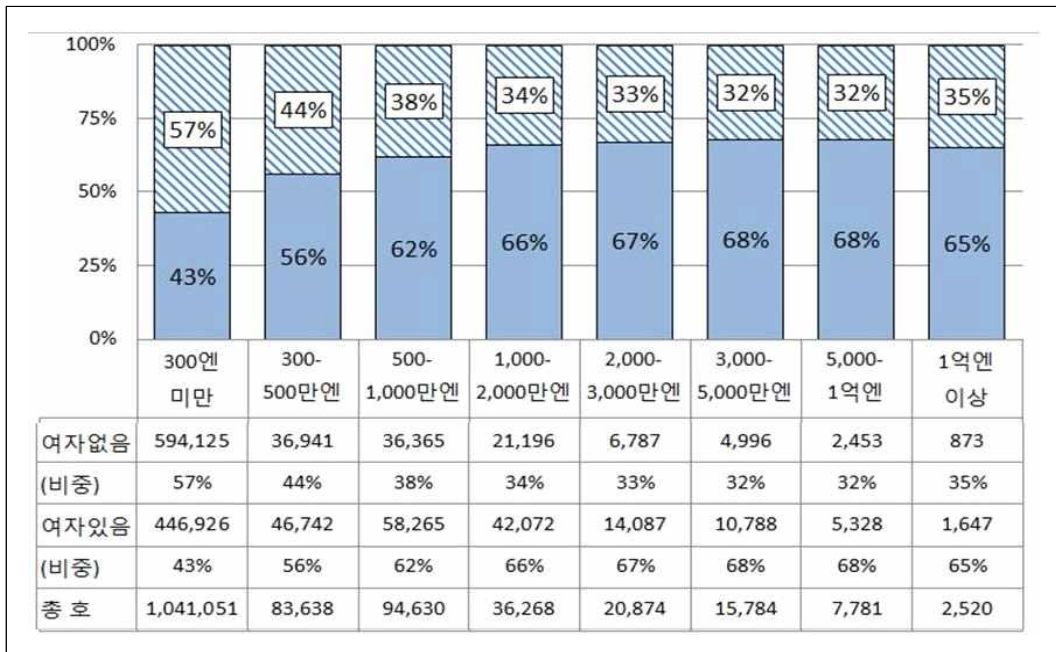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 농업인구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율은 1999년 57.3%에서 2019년 45.4%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매출 규모가 500만 엔(한화 5천만 원) 이상의 농가는 여성이 경영에 관여하는 경향이 60% 이상으로 조사됨(그림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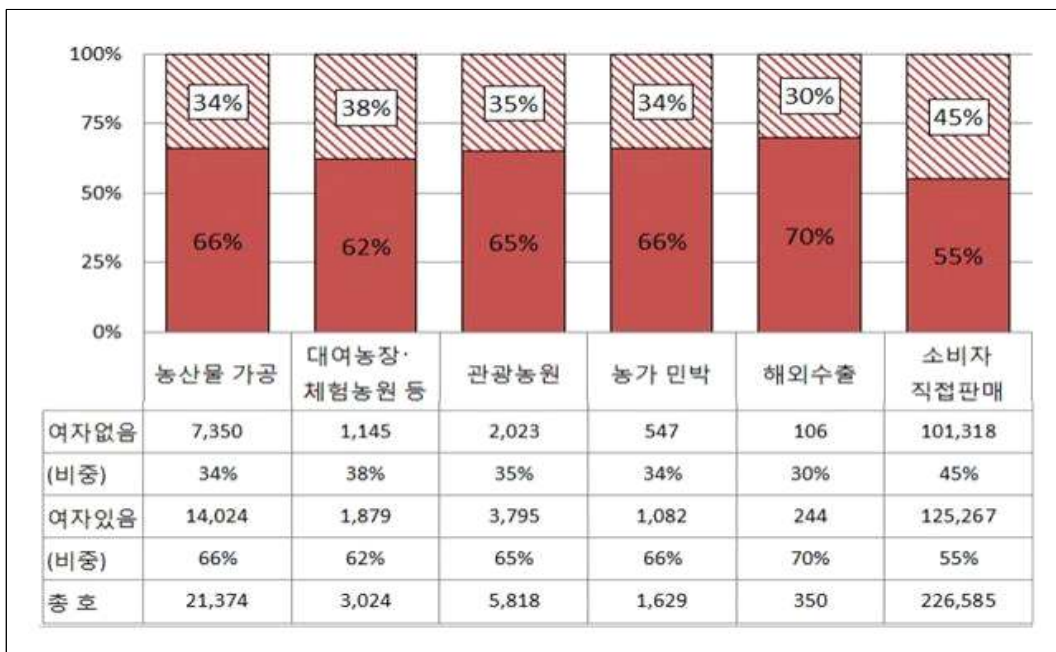
－ 농산물 가공, 체험, 관광, 민박 등 농업경영을 다각화한 경영체는 여성의 경영결정에 참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그림 4-2).

그림 4-1 일본 농산물 판매금액 규모별 농가 수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그림 4-2 일본 농업생산 관련사업의 사업종류별 농가 수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 농가 중 농산물을 판매하는 판매 농가의 47%는 여성농업인이 경영에 적극 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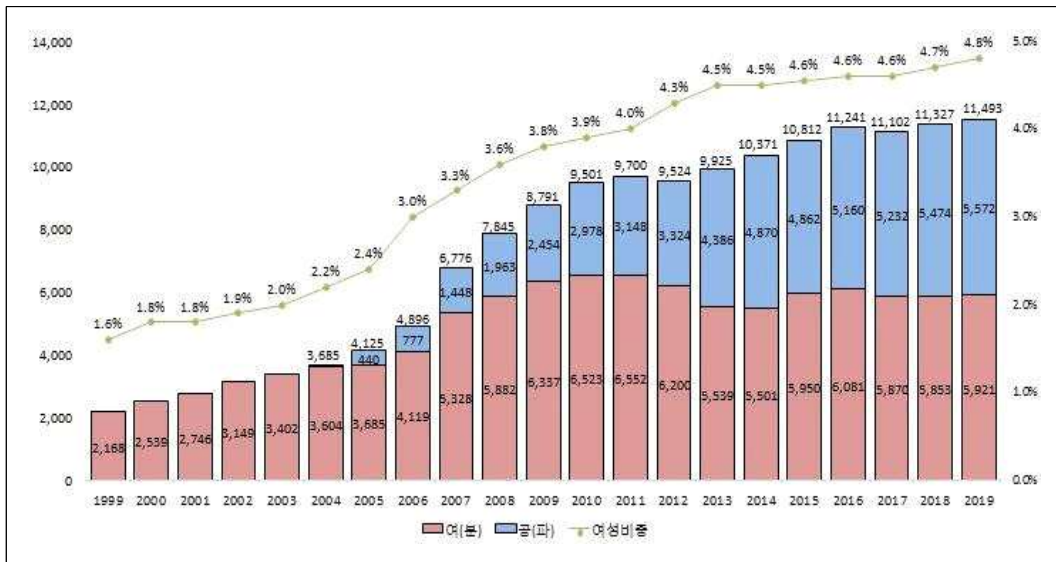
－ 여성농업인의 인정농업자 수는 2019년은 1만 1,493명으로 전체 인정농업자의 4.8%에 불과하지만 여성도 공동신청이 가능하게 된 2003년에 비해 2019년은 약 3배가 증가함.

－ 여성농업인이 인정농업자 자격을 얻으면서 경영에서 여성의 지위가 명확해짐.

일본 인정농업자 제도

- 농업인이 농업경영 개선을 추진하는 계획을 지자체가 인정하고 중점 지원하는 제도임.
- 인정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야 함.
 - － 첫째, 경영규모 확대에 관한 목표(작부면적, 사양두수, 작업 수탁면적)
 - － 둘째, 생산방식의 합리적인 목표(기계나 시설 도입, 신기술 도입 등)
 - － 셋째, 경영 합리화 목표(복식부기에서의 기장 등)
 - － 넷째, 농업종사 형태에 관한 개선 목표(휴일제 도입 등)임.
- 인정 기준은 농업인의 계획이 지자체 기본구상과 적절하고, 농지를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이용할 것, 농업인의 계획 달성 전망이 확실할 것임.

그림 4-3 여성 인정농업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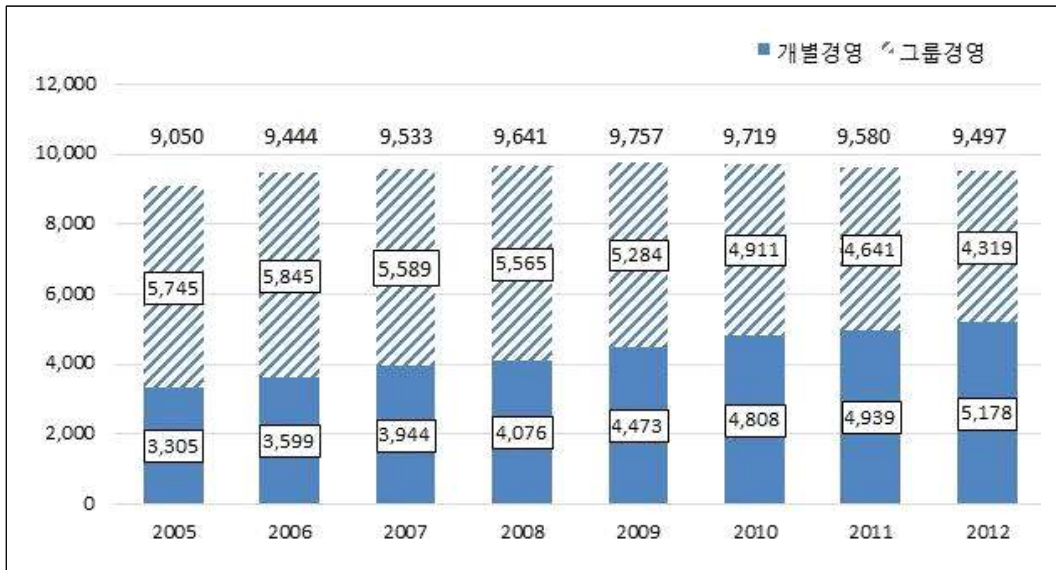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 지역 농산물 활용 특산 가공품이나 직판장에서 판매 등 농촌여성의 창업 활동은 2007년 이후 거의 정체함.

-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며 활동내용에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300만 엔(한화 약 3천만 원) 미만 영세 경영체가 절반을 차지함.
- 농촌여성의 창업활동은 지역자원의 이용을 전제로 함. 지자체 차원에서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의 고도화,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그림 4-4 창업 활동의 추이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그림 4-5 창업 활동의 매출액(최근 1년간)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1.2. 여성농업인과 가족경영협정 체결

○ 일본은 근대적인 가족농업 경영 실현을 위해 가족 모두가 농업경영 방침과 가족 구성원의 역할, 취농조건, 취농환경 등에 합의하며 제3자 입회 하에 체결하는 가족경영협정 제도가 있음.

－ 가족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각 세대원이 농업경영 목표, 경영 방침 및 역할 분담, 가족 모두가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가족 간 충분한 협의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체결함.

－ 가족경영협정은 2019년 현재 전체 농가 중 24.7%가 체결함.

표 4-5 가족경영협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비율	주요 내용	비율
노동 경영 방침 결정	92.8	수익 배분(일급·월급 이외의 이익 분배)	69.3
노동 시간/휴일	92.7	경영 이양(상속 포함)	54.1
농업에서 역할 분담(작업 분담, 부기 기장 등)	81.2	생활에서 역할 분담(가사, 육아, 돌봄)	44.8
노동 보수(일급·월급)	74.9		

주: 2017년 신규 체결농가 조사 결과이며 복수 응답임.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그림 4-6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 수 추이



주: 매년도 3월 31일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 미야기 현과 후쿠시마 현 일부 지자체의 체결 농가 수는 2010년 3월 31일 현재의 데이터를 인용함.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표 4-6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의 비중

주업 농가 수(천호)		236
	가족경영협정 체결 농가수(호)	58,182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24.7

주: 농가 수는 주업 농가 수. 주업 농가는 농업 소득이 농업 외 소득이상이며, 농업에 종사한지 60일 이상 된 65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 농가임.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 가족경영협정 체결의 제도상 장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 차세대 인재 투자 사업(경영개시형)에 부부가 함께 취농한 경우, 가족경영협정과 경영 자원의 공유 등에 따라 공동경영자인 것이 명확한 경우는 부부합산 1.5인분을 지원받음.
- 인정농업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실제 여성농업인이 공동 경영하는 경우, 수익 배분과 경영 방침 결정에 참여가 명확하게 가족 경영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요건으로 부부의 인정농업자 공동신청이 가능함.³⁸⁾
- 농업인연금은 인정농업자와 가족경영협정을 체결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배우자, 후계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료(2만 엔) 중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함.

○ 한편,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활동은 농업위원회 또는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평가할 수 있음. 농업위원회 또는 지역농협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업 위원 12.1%, 농협 임원 8.4%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일본의 젠더 정책인 제4차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2018년 12월) 중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농업위원 및 지역농협의 위원·임원 중 여성 비율의 목표 설정 및 지역에서 노력을 명시하여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표 4-8).

38) 일본 농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결혼으로 농가의 배우자가 된 여성에게 토지를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동경영의 물증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이용함.

표 4-7 농업인단체 임원 중 여성 비율 추이

단위: %, 명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농업위원	59,254	45,379	36,330	35,604	33,174	26,119	23,196	23,125
여성	1,081	1,869	1,792	2,636	2,671	2,773	2,747	2,788
비중	1.8	4.1	4.9	7.4	8.1	10.6	11.8	12.1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농협 개인 정조합원	5,240,785	4,998,029	4,707,348	4,415,549	4,348,560	4,283,685	4,225,505	4,229,841
여성	746,719	804,583	890,718	937,145	939,283	940,351	945,416	945,697
비중	12.2	16.1	18.9	21.2	21.6	22.0	22.4	22.4
농협임원	32,003	22,799	19,161	18,139	17,542	17,272	16,916	16,260
여성	187	438	741	1,313	1,310	1,327	1,347	1,366
비중	0.6	1.9	3.9	7.2	7.5	7.7	8.0	8.4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표 4-8 제4차 남녀공동참가 기본계획 중 지역·농산어촌·환경분야의 남녀 공동 참가 추진
참가 추진

항목		성과목표(2020년)	2019년 5월 현재
농업위원회 여성위원 비중	여성 위원이 등용 되지 않은 조직 수	0	273/1,703 (16.0%)
	농업위원회 여성위원 비중	10%(초기), 30% 목표	12.1%
농업협동조합 여성임원 비중	여성 임원이 등용 되지 않은 조직 수	0	100/607 (16.5%)
	농업협동조합 여성임원 비중	10%(초기), 15% 목표	8.4%
가족 경영 협정 체결 수		70,000개	58,182개

주: 농업위원회- 「농업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상황」은 매년 10월 1일, 현재 상황은 2019년 5월 전 연도의 수치임. 농협 임원- “종합 농협 통계표” 각 사업 연도, 현재는令和 전 연도의 수치로 전국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조사임. 가족 경영 협정 체결 수는 2018 년도의 수치임.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06.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1.3. 농가의 소득세

○ 농가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농업인 대부분은 개인 사업주로 분류됨.

－ 농업수입(소득이 아님, 농산물 판매대금이나 가공, 체험,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말함)

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함.

- 확정 신고는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동시에 연간소득을 확정함. 이에 따라 이듬해 주민세가 달라짐. 적자가 되어도 손익통산함.

○ 농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 사업주의 기초 공제액은 38만엔(약 420만원)임.

- 농업 수입이 38만엔 이하는 소득세과 부가되지 않음. 겸업 농업인은 쉽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 세제 절세 혜택이 있음.

2. 프랑스

2.1.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 프랑스는 1945년 이후 산업화 과정 중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사이에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 옴.

-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지위는 「1980년 농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순히 ‘농업경영주의 협력자’로 남아있었음.

○ 1980년 농업기본법 제정 이후 1999년, 2005년, 2010년 농업기본법 및 농업현대화법 제정으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점차적으로 향상됨.

- 1985년 EARL(유한책임영농회사)에 참여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부여 이후,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은 농업경영체(사업체)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1999년 농업기본법에 그동안 애매한 표현인 ‘함께 영농하는 동료’라는 지위를 대체하여 ‘배우자-협력자’의 지위를 신설하였고, 2005년 농업기본법은 여성농업인이라

- 면 경영주, 임금노동자, 배우자-협력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함.
- 2010년 부부도 GACE(공동영농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농업인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됨.

표 4-9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과정

시기	여성농업인 지위 내용	관련법
1973년	여성의 노동을 인정하여 '농업경영주의 협력자'로 인정된 지위를 가짐.	
1980년	여성 배우자는 부부 사이의 상호 위임에 따라 '함께 영농하는 동료'의 지위 획득함.	「1980년 농업기본법」
1982년	여성 배우자는 가족 영농으로 구성된 '사실상의 회사'에 완전한 권리를 갖는 주체 또는 공동경영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여성도 자신의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주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됨.	
1985년	이 때부터 설립 가능해진 EARL(유한책임영농회사)이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 부여함. 각 배우자는 자신의 작업과 책임을 개별화하여 회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됨(GACE(공동영농회사)는 부부가 설립할 수 없음).	
1988년	여성농업인도 개별적으로 귀농지원금(대표적으로 DIA: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1999년	'함께 영농하는 동료'라는 지위를 대체하여 '배우자-협력자'의 지위를 신설함. 단, 경영주인 남편의 허가가 필요함.	「1999년 농업기본법」
2005년	영농 활동을 수행 중인 여성농업인에게 경영주, 임금노동자, '배우자-협력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됨.	「2005년 농업기본법」
2010년	부부도 GACE를 설립할 수 있게 됨.	「2010년 농업현대화법」

자료: 정은미 외, 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농업부문 사회보장제도와 여성농업인의 지위

2.2.1. 사회보장제도 개요

○ 프랑스 농업부문 사회보장제도는 사회 일반의 사회보장제도와 동시에 시행됨.

- 1945년 농업부문은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2,3차 산업)과 다른 MSA(농업부문 사회 보장공제)를 설립함. 이후 현재까지 농업부문의 사회보장 제도는 별도로 운영됨.
- 1950년대 농업임금노동자와 경영인을 위한 노후 보험, 1960년대 농업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1977년 여성농업인 대상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 채용 보조금지급이 시행됨.

○ 농업인은 MSA(농업사회보장공제)에 의무 가입하게 됨. 농업사회보장공제는 비임금농업인과 임금근로자 2종류로 구분됨.

－ 비임금농업인 : 농업경영주, 배우자－협력자, 가족종사자 250만명(2011년 현재)

－ 임금근로자 : 현직노동자, 산재노동자, 퇴직노동자, 권리보유자 370만 명

표 4-10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확립 단계

시기	주요 내용
1945년	MSA(농업사회보장공제) 설립
1951~58년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를 위한 노후보험 정착
1952년	농업경영인을 위한 노후보험 설립
1960년	BAPSA(농업사회보장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이 예산은 2009년 MSA로 이관), ASS(보건사회활동) 시행
1961년	AMEXA(농업인 건강보험) 설립
1966년	ATEXA(자영농을 위한 산재보험) 설립, 자유 가입
1972년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 설립
1977년	여성농업인 출산휴가 시행(1986년부터 8주), 대체인력 채용 보조금 지급
2002년	ATEXA 개혁, 농업인의 직업적 위험 예방을 위한 기금(MSA 운용) 설립
2003년	농업경영주, 농업회사 경영인을 위한 RCO(의무추가연금) 제도 도입
2008년	사회보장 재정 관련 법률에 의해, 여성농업인의 출산휴가 기간이 여성임금노동자의 기간과 같아짐

자료: 정은미 외. 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MSA(농업사회보장공제)는 4종류의 사회보장 급여를 지급함.

－ 질병, 출산, 장애, 고령

－ 산업재해, 직업병

－ 퇴직연금, 유족연금

－ 가족수당, 장애수당, 주거수당

○ MSA(농업사회보장공제) 이외의 사회보장제도

－ 농업인과 가족은 AMEXA(농업인 건강보험) 가입으로 의료비와 약제비,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비용, 장애연금 등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음.

－ 임금노동자는 ASA(농업사회보험) 가입으로 건강, 출산, 장애, 고령화와 관련된 사회 보장과 추가로 저소득층의 경우 CMU-C(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의 의료공제)의 지원

을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분담금 없는 사회보장으로 각종 가족수당과 최소생계보장비(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한부모가족, 장애인지원 등)이 있음.

2.2.2. 여성농업인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 2005년 농업기본법 제정시, 여성농업인은 다음 3가지 지위(경영주, 배우자-협력자, 임금노동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됨.

- 3가지 지위 형태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달리 적용함.

○ 첫째, 경영주(공동경영주 포함)는 배우자 모두 동등한 권리를 보유하지만 고비용을 지불해야 함.

- 배우자 각자는 자신의 소득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각각 납부해야 함.

- 그 대신 질병, 출산, 산재, 가족수당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퇴직연금 산정에 필요한 납입연수, 납입금액 등도 각각 따로 계산함.

○ 둘째, ‘배우자-협력자의 지위는 분담금과 급여 모두 낮은 수준임.

- MSA(농업사회보장공제) 기준 연간 분담금의 3.2%는 AVI(노령보험)에 의무 가입함.

- 매년 413유로를 추가 납부하면 퇴직연금 계산 시 16점 추가. 하지만 점수가 추가되더라도 60세 퇴직 시 퇴직연금은 농업경영주보다 더 많을 수는 없음.

- 연간 22유로를 납부하면 장애나 산재 발생 시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셋째, 임금노동자의 급여는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고, SMIC(최저임금, 2019년 10.03 유로) 이상이 적용됨.

- 임금노동자의 분담금, 수당, 퇴직연금 등은 임금에 비례하여 결정되며, 비임금노동자인 경영주, ‘배우자-협력자’ 보다는 높음.

표 4-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보장 분담금과 수당

분류	농업경영주(단독/공동)	배우자-협력자	임금노동자
질병	전체 소득에 따른 분담금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	농업경영주의 배우자-협력자로서 권리 보유,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	임금에 따른 분담금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급
출산	출산휴가와 대체인력수당	출산휴가와 대체인력수당	출산휴가
장애	60세 미만, 최소 1년 이상 납입, 2/3 이상의 장애 시 연간 3,300~ 4,300유로의 수당	연 22유로 납입	단체협약으로 결정
노령	60~62세 이상, 1년 이상 납입 연간 3,560유로	70분기 납입, 연간 413유로로 16점 획득, 농업경영주보다는 적은 연금	160~164분기 납입 임금수준이 높았던 25년 동안 연평균 임금의 50%
정액퇴 직연금 (RCO)	소득의 3%(최소 1820 최저임금 SMIC), 연간 최소 100점 획득	소득의 3%(최소 1820 최저임금 SMIC), 연간 최소 66점 획득	의무 아님
산재· 직업병	100% 환급, 20~27유로의 휴업수당 (일간), 산재수당, 유족수당, 장례비 (1,543유로) 지원	연간 22유로 납입	100% 환급 일정 기간 동안 임금 보장, 장애수당
생활 사고	170~185유로, 2014년부터 20~27유로의 휴업수당		10~40유로의 휴업수당
휴가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	연간 5주

주: 대체인력지원서비스는 가입자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일시적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영농활동을 수행할 인력고용을 지원함. 질병·사고, 출산휴가, 교육·훈련 및 농민단체나 조합의 상근직 또는 선출직 임기 수행, 삶의 질과 휴가 등임.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3. 배우자-협력자와 임금노동자의 비교

○ 첫째, 임금노동자(배우자일 수도 있음)의 지위는 PEE(Plan Epargne Entreprise), PERCO(Plan Epargne pour la Retraite Collective) 등과 관련하여 재정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음.³⁹⁾

- 노동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해 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것임.
- 임금노동자가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농업경영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PEE에 납입된 자금은 5년 동안 되찾아 갈 수 없으며, PERCO의 경우는 퇴직 시에만 찾아갈 수 있음. 사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줄 상여금을 여기에 납부할 수도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분담금에서 공제됨.

39) PEE는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과 유사한 제도이고, PERCO는 이중에서도 퇴직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역주)

○ 둘째, 배우자가 함께 영농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금노동자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각종 사회보장분담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님.

－ 사회보장분담금은 실제 노동시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노동시간의 일정 부분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과 가족수당에의 권리가 부여됨. 다만 퇴직연금을 위한 분담금은 임금 총액에 의해 결정됨.

－ 또한 임금노동자인 배우자의 임금은 다시 커플에 귀속되게 되어, 이에 따른 혜택도 누릴 수 있음. 더구나 임금과 사회보장분담금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선택하는 것은 소득뿐만 아니라 MSA의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과 세금에 영향을 미침.

○ 이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배우자-협력자 대신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선택하는 것이 연간 2만 유로에서 2만 5천 유로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표 4-11 배우자-협력자와 임금노동자 보험가입 비교

구분	배우자-협력자	임금노동자
퇴직	비례퇴직연금과 정액퇴직연금(RCO 포함)에 가입	자신의 고용주와 함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
건강·고용	건강보험과 산재보험(160~170유로)에 가입, 장애보험(23.50유로)과 교육·훈련보험(50유로)에 가입	임금보존, 장애, 의료상호공제, 생명보험 등 더 넓은 범위의 보험에 가입. 한편, 임금노동자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음.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해외 사례 시사점

3.1. 농업경영체 정비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에 변화

- 프랑스와 일본도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향으로 농업경영에서 노동인력 부족만이 아니라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도 부족하게 됨.
 - 후계자가 없는 경영체가 발생하고 전반적인 농업의 위기로 인식하며, 당시 농업의 보조자로 여겼던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이나 지역농업의 담당자로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를 부여하게 됨.
 - 프랑스의 경우도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농업의 주체로 인정받게 된 역사는 최근 30여년 정도에 불과함.

3.2. 농업경영체는 조세 및 사회보험에 가입으로 법적 지위 획득

- 선진국의 사례에서, 농업경영체는 개인이 아니라 사업체로서 인증받고 조세상의 사업자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며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법적 지위를 얻음.
 - 가족농도 농업경영체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조세 의무와 사회보험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영체이고, 이 경영체의 경영주일 때 비로소 의미있는 지위 획득이 됨.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해당됨.
 - 프랑스는 가족농을 기반으로 하는 농가 경영이 법적인 농업경영체로 인정받고 그 농업경영체 안에서 경영주의 여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거침.
 - 반면 일본은 1980년 이후 농업 소득세 시행을 계기로 농가가 곧 경영체이고 여성농업인이 회계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경영주 지위에 관한 의식의 진전이 있었음.

3.3. 여성농업인의 우대 정책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프랑스 농정에서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지원이나 차별적 조치는 시행되지 않음.
 - 여성농업인이 경영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남녀차별이 없다는 의미임.
- 반면, 일본 농정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여성의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 공적자금이나 보조사업의 지원에 우대 혜택을 줌.
 - 유럽과 일본의 차이는 사회적으로 남녀평등 실현 정도의 차이로 판단됨.
 - 일본은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남아 있고 이 영향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지원제도를 통해 우대하는 것임.
 - 일본은 아직도 남녀차별적인 가부장제가 존재하는 농촌사회에서 지원제도를 통해 여성농업인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단, 일본 농정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우대하는 경우는 가족경영협정을 통해 경영주로서 인정받을 때임. 이러한 사실은 농업경영체로서 인적·물적 조건을 구비한 농업경영주가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함.

5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

1.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의 필요성

1.1. 공동경영주 제도의 문제점

- 농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는 전업·겸업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인 기준(경작면적 1000㎡ 이상, 영농종사 90일 이상, 농산물판매액 120만원 이상)에 부합하면 농업경영주로 등록이 가능함.
 - － 경영주로 등록시 농민수당, 직불금, 면세유, 농업용 기자재 면세율 적용, 재해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 지원 등이 지원됨.
- 그러나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경영주 외의 농업인)는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 공동경영주는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경영주와 동일한 혜택 없음.
 - － 따라서 ‘공동경영주’는 겸업을 하거나 일용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공동경영주 등록이 되지 않거나 기등록자도 취소가 되어 공동경영주의 자격을 잃게 됨.

○ 경영주는 겸업에도 농업인 지위 유지하지만, 공동경영주는 상실한다는 문제가 있음.

－ 여성농업인이 겸업을 할 경우, 공동경영주의 지위 상실로 인해 행복바우처, 농협조합원 가입 자격요건 상실 등 농업인에게 부여되는 수혜로부터 제외됨.

－ 또한 ‘경영주’를 제외한 ‘경영주 외 농업인’(공동경영주 포함)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경우 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음.

1.2. 공동경영주, 여성농업인의 당면한 현실

○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은 현실적으로 겸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농가의 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3년 40%에서 2018년 30.7%까지 감소함(표 5-1).

－ 역으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러므로 농가는 농외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전소득은 그나마 안전한 소득원으로 작용하는 현실임.

－ 2018년 전체 농가소득에서 겸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겸업농가가 43.2%에 이를 정도로 겸업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임.

표 5-1 농가경제 조사 항목별 추이

단위: 천원, %

	2015	2016	2017	2018	구성비	2019	구성비	증감률 (‘19/’18)
농 가 소 득	37,215	37,197	38,239	42,066	100.0	41,182	100.0	-2.1
－ 농업소득	11,257	10,068	10,047	12,920	30.7	10,261	24.9	-20.6
－ 농업외소득	14,939	15,252	16,269	16,952	40.3	17,327	42.1	2.2
－ 이 전 소 득	7,906	8,783	8,902	9,891	23.5	11,230	27.3	13.5
－ 비경상소득	3,114	3,095	3,022	2,302	5.5	2,364	5.7	2.7
농가 자산	453,580	474,309	505,881	495,687	—	529,455	—	6.8
농가 부채	27,215	26,730	26,375	33,269	—	35,718	—	7.4

자료: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201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농업인의 겸업은 부족한 농업소득을 보완하는 필

수노동으로 자리함. 여성의 겸업이 농업경영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함.

－ 농업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2천만 원 미만)는 60.3%, 여성농업인의 32.1%가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⁴⁰⁾을 하고, 농외 소득활동의 종류는 농업 일용직 56.1%, 농업 외 일용직 25.4%의 순으로 참여함.

－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추가소득 마련 38.5%, 생활비 부족 14.6% 등 경제적인 이유가 전체 53.1%로 조사됨. 연령이 낮을 수록 소득활동을 희망하고 ‘경제적 이유’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일반농의 53.0%, 고령농의 42.1%, 다문화 여성 50.2%, 귀농 56.7%로 높은 편임.

표 5-2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 희망 이유

단위: %

		추가소득 마련	생활비 부족	재능 활용	사회생활 위해	기타
전체		38.5	14.6	3.8	1.8	2.3
유형	일반농	38.6	14.4	3.8	1.7	2.3
	고령농	30.9	11.2	2.6	0.9	2.0
	다문화	27.8	22.4	3.9	7.8	1.8
	귀농	40.7	16.0	5.1	1.7	2.7
연령	~30대	37.4	23.1	7.5	7.1	0.7
	40대	47.0	20.6	4.5	2.7	1.3
	50대	45.6	18.4	4.0	2.3	3.4
	60대	42.2	15.3	4.8	2.0	3.2
	70대~	29.2	9.4	2.2	0.5	1.1
영농 규모	소규모	35.5	13.9	3.6	1.6	2.0
	중소규모	40.1	15.2	3.2	1.4	2.9
	중규모	38.2	15.6	2.8	2.7	1.7
	중대규모	45.2	11.0	11.5	1.5	1.3
	대규모	66.4	17.9	1.9	3.0	6.1

주 1) n=1,584명의 통합통계 보정 수치임. 소득활동 의향이 없는 39.2%를 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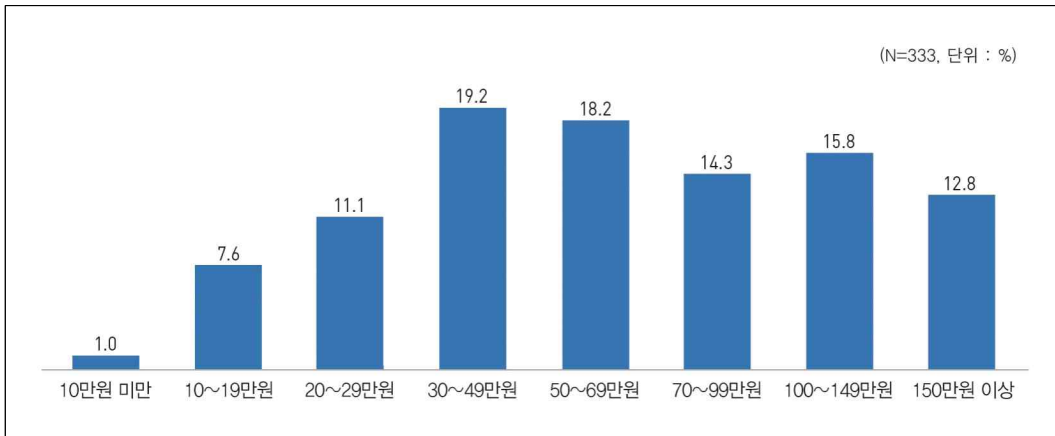
2) 기타는 유희시설 활용, 정책적 지원(타인의 권유)가 포함됨.

자료: 안석 외. 2019.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0) 2018년 조사문항 Q16 “귀하는 농업생산 이외에 다음의 분야에서 일하는 소득이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다음은: 자영업, 취업, 시간제 노동 등 농업과 관련된 농산물 가공, 농산물 판매, 농업 임노동, 농촌 관광 등 농업생산 이외 소득활동을 포함한다.

- 여성농업인이 농외 소득활동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은 20만 원 미만 8.6%, 20~70만 원 미만 48.5%, 70만 원 이상 42.9%로 나타남. 농외소득의 월평균 소득 수준은 87.2%가 150만원 이하임.

그림 5-1 농외 소득활동의 월평균 소득수준



주: 농외 소득활동 경험자로 통합통계의 보정 수치임.

자료: 안석 외, 2019.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의 법적 대안

2.1. 법적 개선 방안

- 현행 기본법, 농업경영체법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각종 법령은 다양한 형태의 부부 간 농업공동경영을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규율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 부부 간 농업 공동경영의 모습으로 ‘조합’, ‘내적 조합’, ‘익명조합’, ‘지분적 조합’, ‘재산 없는 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에도, 현행 기본법은 ‘농업을 경영하는 자’와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을 대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부부가 농지를 합유⁴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공유⁴²⁾하여 공동으로 농

업경영을 하는 경우에도 ‘지분적 조합’관계로서 부부가 모두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농지가 어느 일방 배우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농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이를 ‘내적 조합’(‘익명조합’)으로 보아 역시 부부가 모두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

－ 일방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도 역시 ‘재산 없는 조합’이면서 동시에 ‘내적 조합’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 부부가 농업을 공동경영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부가 모두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 쌍방이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외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의무 또한 부담해야 함.⁴³⁾

－ 그러나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족농을 포함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하므로, 농업인(개인)과 농업경영체(사업체)이 분리되지 않은 전근대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41)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합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2)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43)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대부분의 농업경영체는 일반 사업체와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어 사업체의 의무인 조세제도가 작동하고 그에 따라 현대사회의 사업체를 규정하는 납세 근거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2.2. 농업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의 지위에 관한 조항 신설

- 공동경영주는 사업체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해야 함.
 - 그 대안으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법률 규정이 필요함.
 - 프랑스는 2005년 농업기본법에 여성농업인이라면 경영주, 임금노동자, 배우자-협력자 중 하나의 지위를 선택하도록 의무화 함. 단,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회보장제도와 연동하여 시행함.
- 국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가족농가’와 ‘농업경영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점을 시정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공동경영주, 임금노동자에 대한 규정 조항을 신설함.
 - 첫째, ‘제3절 농업인력의 육성, 제24조 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에서 가족농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업체의 이미지와 상반된 전근대적 인식을 배경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시급히 필요함.
 - 둘째, 제24조 ‘농업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기본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여성농업인, 조합 및 회사법인, 벤처농업, 귀농업인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들은 농업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일 뿐이지 농업종사자의 지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2.3. 농업경영체법 개정

- 농업경영체법의 제2조(정의) 제3항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의 수정해야 함.
 - 농업경영체를 농업인(개인)이 아닌 사업체로 규정해야 함.
 - 현재, 농업경영과 가계 생활이 미분리된 형태로는 사업체로 규정하기 어려움.
 - 단, 사업체로 정의할 경우, 독일 농업경영체 등록과 같이 “농업 사업체의 최소 규모 규정 및 사무서에 사업자 신고”가 필요함. 즉 농업경영체 제도의 변경보다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업관련 시스템 변경이 필요함.

3. 공동경영주의 겸업 소득 인정하는 임시 개선방안

3.1. 소농직불금 지급 조건

-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은 자격조건을 낮추어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는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가 부여됨.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 생태관리, 농촌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생태계 보전 준수 의무가 강화되지만 신규 도입의무는 현장여건을 감안해 연차별로 활동수준을 강화하게 됨.
 - 소농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기본 경영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일원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함. 또한 부정수급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불금 집행과 이행점검, 사후관리를 담당함.
 - 신청단계에서 보조사업(8개) 이력정보를 사전 비교·확인하고, 동일 농지에서 수급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가 소명토록 조치하며 현장점검 인력을 확충하고 드론 활용으로 이행점검을 효율화함.

○ 소농직불금은 일정 규모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축산시설재배 규모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단,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임.

－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 하기 위해 “①배우자, ②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③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 즉, 배우자는 세대 분리된 지 3년이 넘어도 포함되며, 19세 이상의 자녀는 혼인을 제외한 취업, 대학생, 무직이더라도 세대 분리된 지 3년이 넘지 않으면 포함됨.

표 5-3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지급요건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07.16.

3.2. 공동경영주의 겸업소득 최소 인정

○ 현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서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이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농직불금의 기준을 적용하여 현재 공동경영주의 겸업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임.

○ 경영주의 배우자가 겸업하는 경우, 즉 공동경영주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선이 필요함.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여, 경영주의 배우자가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겸업소득의 확인을 거쳐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농가 직접직불금 지급요건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고 동 규정 서식7의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함.

프랑스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

1. 프랑스 농업에서 여성이 처한 상황

○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격변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여성 일반의 상황은 물론 농촌 여성과 여성농업인의 위상에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이 당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목격할 수 있음.

- 소비사회의 도래
- 대규모 유통업의 발전과 3차 산업에서의 여성 고용 증가
- 특히 농업부문에서는 육체노동을 점점 더 소외시키는 현대화와 기계화

○ 당시 농촌사회를 특징짓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평균 영농 규모의 증가였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회사의 등장이었음.

부표 1-1 프랑스 농촌 회사 동향

연도	이름	특성
1945년	농기계 공동이용 조합 CUMA (Coopérative d'Utilisation du Matériel en Commun)	농업경영인에게만 해당
1962년	공동영농회사 GAEC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	부자(父子)에게는 허용, 부부(夫婦)간에는 허용되지 않음
1985년	영농합명회사 SCEA(Société Civile d'Exploitation Agricole) 유한책임영농회사 EARL(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2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사회적 측면에서 당시의 농촌사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으로 특징지을 수 있음.

- 대규모 이농

- 농업인의 여성 배우자를 위한 법적 지위의 부재와 영농에 대한 기여분의 불인정
- 농업인과의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

1.1. 세계대전과 1968년 혁명 이후, 그리고 노동에서 평등권을 위한 투쟁

-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세계대전 이후 임노동의 세계가 여성에게 활짝 열렸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국가경제에 확실하게 기여할 수 있게 됨.
 - 1939년부터 1945년까지의 세계대전은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적 사상의 불을 밝히게 되는데, 이는 특히 레지스탕스에 의해서임.
- 1945년에 비로소 프랑스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⁴⁴⁾ 1970년대에 들어 여성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고, 남편의 허락없이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남자와 동등한 친권을 가질 수 있게 됨.
 - 1968년(피임권 보장)과 1975년(낙태권 보장)에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됨에 따라 여성의 법적·재정적 자율성,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자율성이 더욱 확대됨.
- 20세기 말에야 비로소 직장 내에서의 남녀평등(승진, 임금 등에 있어서의 성에 따른 차별 금지) 실현과 선출직에의 여성 진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됨.
 - 특히 남녀평등의 법률적 보장을 위해 1999년 7월 헌법을 개정하여 법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는 헌법적 원칙에 예외를 둠.
 - 이에 따라 2000년 6월부터 선거에 의한 선출직에 여성쿼터제를 도입, 정당명부 비례대표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함.

44) 영국 여성은 1928년, 핀란드 여성은 1906년에 투표권을 획득하였다.

- 이는 프랑스에 도입된 아주 드문 ‘긍정적 차별(discrimination positive)’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인데, 이때까지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떤 법률도 제정될 수 없었음. 이러한 진보는 전후 공산당, 페미니스트 운동, 노동조합 그리고 좌파 정당들의 노력의 결실임.

1.2. 농업 부문의 여성 지위의 향상

1.2.1. 경제적·법적 지배, 직업의 상실

- 기계화는 농업 부문에서 육체노동을 점점 더 소외시킴. 농업노동자의 수는 이전보다 줄었고, 대규모 농장에서 수십 명의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을 관리하던 ‘농업 임원’의 지위는 점점 사라져감.
 - 농민의 배우자는 이때까지 영농활동과 관련하여 그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어떤 권리도 보유하지 못함.
 - 여성은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노하우(소젖 짜기, 치즈 만들기, 작은 가축 기르기 등)를 가지고 있었으며, (건초를 만들거나 수확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이었음.
-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육체노동의 쇠퇴는 농촌 여성들을 영농활동에서 한직으로 몰아냄. 남성은 농기계로 일을 하고, 여자들은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부품가게로 달려가 부품을 사와야 하는 처지에 놓임.
 - 남성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여성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했음. 이는 일종의 조정 변수로서의 역할임.
 - 소젖도 이제 기계로 짜게 됨. 이에 따라 농촌 여성의 육체적인 노동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으나, 여성들의 노동시간은 임의적인 필요에 따라 좌우되었음.
- 같은 시기에 대규모 유통업자들은 매장 계산원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고, 분할함.

- 여성노동은 전체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지불되는 임금도 적었으며, 남성노동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됨.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보다 더 적게 버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치부됨.

○ 대규모 소비 행태와 유럽 차원의 보건위생 규율의 압력으로 농장이나 근교의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점점 더 줄어들음. 거의 모든 활동에서 여성노동의 경제적 영향력 점점 더 감소하였으며, 가시성(可視性)이 사라짐.

○ 한편, 행정적 서류가 농장에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함. 보험, 영수증, 매매기록, 세금신고, 행정적 신고 등등.

- 남성은 이런 서류작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음. 이 서류들을 처리하는 일은 아주 귀찮은 일로 치부되어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맡겨지게 됨.

○ 이 시기 내내 개인의 생활여건은 아주 열악하였음. 젊은 신혼부부는 부모가 사는 농장에서 같이 거주해야 했으며, 이는 젊은 여성들이 농부와의 결혼을 싫어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음. 현대적인 안락함은 아주 서서히 도입됨.

1.2.2. 1945~1975년 농업 환경 변화

○ CEPPA(Centre de Formation Professionnelle Permanente Agricole: 농업평생 직업교육원)은 1960년대 말에 회계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며, 청년들이 프랑스 농업은행(Crédit Agricole)의 정책자금 융자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200시간의 연수' 프로그램에도 포함됨.

- 그런데 이는 남성에게만 허용된 프로그램이었음.

- 여성들의 경우에는, 농업자문가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함.

- 농업회의소(Chambre d'agriculture)에서 조직된 이 모임은 GVA(Groupement de Vulgarisation Agricole: 농업보급모임)으로 불리다가, GDA(Groupement de

Développement Agricole: 농업발전모임)으로 불리게 됨.

- 이모임을 통해서, 예컨대 시장에서의 채소 가격이 폭락할 때 여성농업인에게 채소 재배를 하지 말도록 권고가 이루어짐. 감가상각의 개념과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현대적인 의미의 경제적 계산의 첨병이 됨.

○ 산업, 서비스, 도시 등에 의해 가속화된 대규모 이농으로 인해 영농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특수한 형태의 회사가 설립됨.(1945년 CUMA, 1962년 GAEC, 1985년 SCEA와 EARL)

1.2.3. 소농조직과 사상운동의 역할

○ 대부분 농촌지역에서는 종교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음. 종교는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자신들의 운명에 순응하도록 하는데 기여함.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기독교 세계에서도 관습이나 터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이 있었음.

- 노동자 신부들과 JAC(Jeunesse Agricole Chrétienne: 기독교청년농민회)가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JAC는 JOC(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 기독교청년노동자회)와 유사한 조직이었음.

- 이 조직들은 사회정의, 투쟁의식, 연대의식 등의 고취에 힘썼는데, JAC의 여성조직인 JACF(1930년대에 결성)는 여성 활동가를 양성하고, 여성을 위한 요구 사항을 구상함. 첫 번째 요구 사항은 시부모들로부터 분가하여 자신들만의 농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문화적 혁명이었음.

○ JAC의 후신인 CNJA(Centre National des Jeunes Agriculteurs: 전국청년농업인센터)는 자신들의 조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인정하여, 이사회 5자리, 집행부 3자리를 여성에게 할당함.

1.3. EU 공동농업정책(Politique Agricole Commun: PAC)과 여성의 특수성 소멸

1.3.1. PAC의 기본 방향

○ 1970년대 말부터 PAC는 프랑스 농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침. 기계화와 더불어 공장식 가축사육의 확대, 평균 영농규모의 증가, 농업인구의 큰 폭의 감소 등이 진행됨.

－ 농촌 탈출은 먼저 농민의 딸로부터 시작됨. 이들은 도시생활의 안락함과 도시의 생활방식, 그리고 비록 숙련노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직업(매장계산원, 타이피스트 등)에 크게 매료됨.

－ 농민의 아들은 부동산 비용과 생활비의 급등으로 도시에 정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음.

○ 더구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량을 예측해야만 하게 됨. 국제곡물가격이 프랑스 농민에게도 그대로 강요되었으며,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은 미국산 옥수수, 아시아산 콩 등의 수익성도 고려하게 됨.

－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농업정책은 생산을 조절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책(장려금, 보조금 등)을 주로 활용함.

－ 재배작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제시장 상황, 주가 동향, 구매센터와 가공업자 사이의 계약 결과, 수익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서류는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도 않고, 트랙터를 잘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게 된 것임.

○ 농촌은 완전히 변하였고, 농촌과 도시 사이의 관계도 크게 변하게 됨.

－ 관광과 ‘농촌의 도시화’는 농촌과 도시의 생활방식의 차이를 줄임. 인구의 대다수는 농촌의 좋은 풍경, 환대, 활력 등과 함께 하는 서비스를 농민에게 추가적으로 기대하게 됨.

1.3.2. 사회적 지위의 향상

- 프랑스에서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의 동일 노동에 대해 남녀 사이에 임금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조치가 취해짐.
 - 나아가 다른 형태의 남녀 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들도 취해졌으며, 1981년 좌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 모든 정부에 이를 전담하는 부처나 대통령 직속의 수석실이 설치됨. 남녀평등에 대한 의식과 실천 모두 서서히 발전해 나감.
- 하지만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지위는 「1980년 농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단순히 ‘농업경영주의 협력자’(1973년부터 인정된 지위로서, 가족관계 내에서이긴 하지만 여성의 노동이 인정됨)로 남음. 이 법 제정 이후부터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점차적으로 향상됨.

1.3.3. 농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과 선출직에의 여성 진출

- 농업 분야에서도 여성들은 조금씩이나마 명확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사회적·경제적 권리 및 의사결정권을 획득해 나감. 나아가 JAC 및 CNJA 여성분과의 노력으로 농업 관련 기관에서의 여성들의 세력이 형성되고, 상호 신뢰 하에 책임자의 지위에 진출하게 됨.
 - 1976년: 최초의 여성 농업회의소 의장 탄생(코레즈 지방)
 - 1994년: 최초의 여성 CNJA 소장 탄생
 - 1997년: 최초의 여성 MSA(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업사회보장공제) 이사장 탄생
 - 2012년: 농업회의소 의원선거 후보자 명부 작성 시 최소한 후보자의 1/3 이상을 여성으로 할 것을 의무화함. 2013년의 경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전국의 4051명의 상공회의소 의원 중에서 여성은 1100명이며, 3인의 여성은 농업회의소 의장으로 선출됨.
- 농업 담당 부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여성농업인의 출산 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대체인력 고용이 여성농업인의 권리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
- 여성의 귀농 지원
- 유럽연합의 PAC 두 번째 단계 시행 시 여성 관련 프로젝트 지원
- 여성농업인의 퇴직연금 관련 권리 확대(현재 45만 명의 여성농업인이 월 534유로의 퇴직연금 수령)
- 정형화된 농업교육 탈피(이를 위한 교육네트워크가 2012년에 새롭게 형성되었음)

1.3.4. 사회 · 경제적 진보와 농업의 현대화

○ 1977년부터 특별 융자와 보조금 등의 혜택에 힘입어 여성농업인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 바로 여성들을 위한 ‘200시간의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임.

- FNSEA(Fédération Nationale des Syndicats d'Exploitants Agricoles: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와 CNJA 여성부소장 사이의 오랜 논의 끝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교육 · 연수 프로그램이 시행되게 됨.

- 사무 · 회계, 독자적인 농가 경영, 농장으로의 전환, 농촌 관광 등에 관한 교육이 중시됨. 이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농업인의 아내로서 현재 영농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이용함.

○ 여성의 독자적인 영농활동은 주로 작은 가축을 사육하는 것으로 시작됨.

-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임. 이렇게 해서 여성농업인은 자신의 직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됨.

○ 비록 몇 십 년 늦기는 했지만, 여성농업인도 도시의 여성들과 같은 권리를 점차 획득해감.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지만, 지방의회에 대규모로 진출했음.

- 여성들의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높아졌으며(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75년 22세에서 1998년 25세로 높아졌는데, 늘어난 기간 동안 교육 · 훈련과 학업에 종사), 도

시의 여성들처럼 자녀도 평균 2명만을 낳았다(1988년의 출산율은 1.88을 기록하여
전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2010년에는 2.2까지 상승. 참고로 1964년의
출산율은 2.9).

1.3.5. 2013년 프랑스의 상황

○ 지난 30여 년 동안 농촌과 농업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어 왔다는 것은 명백함.

부표 1-2 2013년 프랑스 상황

구분	
영농규모	· 여성농업인의 평균 영농 규모는 남성농업인의 62ha보다 작은 36ha · 4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의 43%는 소규모 영농에 종사 · 이 들 중 20%만이 대규모 영농 활동 수행
연령	· 여성농업인의 평균 귀농 연령은 남성농업인의 29세보다 많은 31세
분야	· 양, 염소 및 기타 초식동물 사육업 30% · 채소작물 및 원예작물 재배업 24 % · 포도재배업 23 % · 소비자나 소매상에서 직접 판매 · 영농 분야의 다각화 · 관광업에도 종사
애로사항	· 농지 획득의 어려움 · 몇몇 작업수행에 있어서의 육체적 고통 · 가정생활과 양립이 어려운 교육·연구 · 출산이나 질병 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제4장에서 언급하였고 본 절에서는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를 상세히 살펴봄.

2.1. 지위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 법률에 따라, 직업으로서 정기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은 경영주, 배우자-협력자, 임금노동자 중 하나의 지위를 가져야 하는데, MSA는 각 지위별로 다르게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자영농의 경우이든 회사 형태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이든 모든 농업종사자는 이 세 가지 지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한편, 경영주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16세 이상이면서 임금노동자의 지위를 갖지 않은 채 무급으로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를 보유할 수 있음.
 - 2005년 5월부터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고, 만약 5년 후에도 계속 영농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위 중 하나를 획득해야 함.
- 무급가족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정액퇴직연금: 분담금은 경영주가 납부하고, 금액도 경영주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됨.
 - 비례퇴직연금: 무급가족종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매년 16점에 해당하는 금액.⁴⁵⁾ 마찬가지로 분담금은 농업경영주가 부담하는데, 금액은 400 SMIC(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됨.⁴⁶⁾

45) 획득한 점수에 정해진 기본 금액을 곱하여 퇴직연금이 결정된다.(역주)

46) SMIC은 우리나라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같은 것으로 400 SMIC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4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한다.(역주)

○ 무급가족종사자는 건강·장애·사망과 관련해서는 AMEXA에 가입되어 있고, 산재와 직업병에 대해서는 비임금농업인을 위한 ATEXA에 가입되어 있음.

– 2011년 1월부터 농업경영주나 농업회사가 1200 SMIC(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납부하여 66점을 얻게 되면 무급가족종사자도 RCO(정액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2.2. 경영주 및 배우자-협력자 농업인의 혜택

○ AMEXA: 건강, 출산, 장애

– 가입한 농업인들은 분담금을 MSA나 GAMEX(Groupement des Assureurs Maladie des Exploitants Agricoles: 농업인 보증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연합체)에 납부하고, 의료보험, 장애보험 등의 혜택을 받음.

부표 1-3 프랑스 농업인 혜택

구분	혜택 유형	혜택 내용
AMEXA	의료보험	치료비, 약제비, 치과 치료비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MSA에 의해 환불되고, 남은 비용은 다른 보험에 의해 환불될 수 있음. 2014년 1월 1일부터 질병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휴업수당도 지급될 예정
	출산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비용 지원	출산, 입양의 경우, 농민은 휴가를 선택하고 대체인력 채용가능, 이에 따른 비용 전액지원.
	장애보험	60세 이하로서 최소 1년 이상 AMEXA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부분적인 장애: 최소 영농활동 수행능력의 2/3 이상을 잃었을 경우, 연간 3,317유로 지급. 완전한 장애: 영농활동 수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연간 4,275유로가 지급.
AAEXA	재취업수당	치료비, 외과비용, 약제비, 입원비, 교통비, 재직응비, 재교육비 등과 재취업에 소요된 비용 전액 지급(요금 기준표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휴업수당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7일간의 기간이 지난 후 8일째부터 28일째까지 매일 20.64유로가 지급되고, 29일째부터는 27.52유로가 지급됨.
	산재수당	노동능력을 30% 이상 상실했을 때부터 지급되는데, 30% 상실시 연간 1,883유로가 지급되고, 100% 상실하면 연간 12,557유로가 지급됨.
	배우자 연금	권리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는 매년 5,023유로가 종신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며, 첫째와 둘째 자녀에게는 3,139유로, 다른 자녀들에게는 2,511유로가 20세까지 연금 방식으로 지급됨.
	장례비지원	1,543유로 한도 내에서 장례비 지원(2013년 1월 1일 기준)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AEXA: 산업재해, 직업병

- 가입한 농업인들은 분담금을 MSA나 이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작업 중 또는 이동(직업 활동을 위한 이동,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직업병을 얻게 되면 산재수당, 휴업수당 등의 혜택을 받음.

○ 질병과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에 대한 수당

- 지금까지 농업인들은 ATEXA를 통해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2014년 1월 1일부터 농업인이 직업병이 아닌 질병에 걸리거나 일상생활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휴업수당이 지급됨. 이에 필요한 비용은 경영주의 분담금으로 조성되는데, 연간 170유로에서 185유로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됨.
- 이 수당은 3년간 최대 360일 동안 지급되는데, 재해수당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급됨. 최초 7일간(입원하는 경우에는 3일간)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질병에 걸린 경우는 8일째부터 28일째까지는 20유로, 29일째부터는 27유로가 지급됨. 참고로 자영업자의 휴업수당은 소득에 비례하며, 노동자의 휴업수당은 10유로에서 40유로 사이에서 결정됨.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장애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
- 한편, 정부도 질병이나 장애로 더 이상 영농활동을 할 수 없게 된 농업인을 위해 퇴직연금 수령에 필요한 점수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경영주에게는 23점, 배우자-협력자나 가족종사자에게는 16점을 제공할 계획임.
- MSA에 따르면, 필요한 경력을 모두 채운 농업인은 월평균 700유로(배우자는 450유로)의 기본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비농업 부문의 980유로(2009년 기준)에 비해 적은 금액임.

○ 퇴직연금

- 비임금농업인(농업경영주, 농업회사 경영인, 배우자-협력자, 가족종사자 등)의 정액 퇴직연금과 비례퇴직연금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액퇴직연금은 AVI에 가입한 농업인에게 지급되는데, 전업 또는 본업으로 영농할

동을 수행하는 비임금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정액퇴직연금은 AVTS(Allocation au Vieux Travailleur Salarié: 고령임금노동자수당)과 같은 액수인데, 2013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간 3,359.8유로(월 279.98유로)가 지급됨.

- 이 금액은 다른 모든 연금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일에 변경됨. 가입자가 이 금액을 전액 수령하려면, 퇴직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최소가입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함. 최소가입기간은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1948년에 태어난 가입자의 최소가입기간은 40년이고 1952년생은 41년, 1953년생과 1954년생은 41.25년, 1955년생과 1956년생은 41.5년임. 가입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액퇴직연금은 100%보다 더 낮은 비율로 계산되며,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책정됨.
- 기본적인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1) 출생연도에 따라 최소 60~62세의 연령에 이르러야 함. 18세 이전에 영농활동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영농활동에 종사했거나 장애가 있거나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인해 더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기퇴직도 가능함.
 - 2) 비임금농업인으로서 최소 1년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며 분담금을 납부해야 함.
 - 3) 비임금농업인으로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함. 다만 영농활동을 계속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례와 특별조치도 사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

○ 추가 퇴직연금

- 2003년 4월 1일부터 농업경영주나 농업회사 경영인은 추가로 RCO(정액퇴직연금)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2003년 이전에 퇴직한 농업경영주나 농업회사 경영인은 추가적인 퇴직연금을 무상으로 제공받게 됨.
- 2003년 1월 이후에 퇴직하는 농업경영주와 농업회사 경영인은 무상으로 그리고/또는 분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됨
- 농업경영주나 농업회사 경영인의 배우자도 RCO(정액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한편, 2011년 1월부터 RCO(정액퇴직연금) 제도가 확대되어, 농업경영주나 농업회사 경영인의 협력자-배우자와 가족종사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무상으로 획득되는 권리

- 2003년 이전에 퇴직한 농업경영주의 경우에는 영농활동 기간 전체가 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퇴직연금이 지급됨. 200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한 농업경영주의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산 시 2013년 1월 1일 이전의 농업경영주로서의 영농활동 기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간 100점의 혜택이 무상으로 제공됨.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령 가능한 퇴직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 동안 영농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7.5년 이상은 농업경영주의 지위를 유지했어야 함.

○ 유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

- 무상으로 제공되는 권리 이외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추가적인 RCO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주나 농업회사 경영인은 근로소득의 3%를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최소 분담금은 1820 SMIC인데, 2011년의 경우는 연 515유로).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분담금에 비례하고 상한은 없는데, 최소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매년 100점의 혜택이 부여됨. 최저 분담금 이상의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혜택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됨. 즉, 매년 얻을 수 있는 RCO 점수 = $\text{연간 근로소득} \times 100 \div 1820 \text{ SMIC}$
- 배우자-협력자와 가족종사자의 분담금은 1200 SMIC의 정액으로 농업경영주가 납부하는데, 이에 따라 연간 66점의 혜택을 받음.

○ 수령자

- 2010년 기준, 총 50만 7천명이 RCO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중 4만 8천명은 유족 연금으로 지급되었음.

2.3. 대체인력지원서비스

- 대체인력지원서비스는 가입자가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일시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입자를 대신하여 영농활동을 수행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함.
- 질병·사고
 - 영농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보험(Assurance Main d’Œuvre de Remplacement)’에 따라 대체인력 관련 비용이 지원됨.
- 출산휴가
 - 농업사회공제조합(Mutualité Sociale Agricole)나 GAMEX는 대체인력 관련 비용 전액을 지원함.
 - 출산의 경우에는 16주에서 46주, 입양의 경우에는 8주에서 22주의 기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父)에게는 11에서 18일의 기간이 보장됨.
 - 매년 약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이러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 교육·훈련, 농민단체나 조합의 상근직 또는 선출직 임기 수행
 -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이나 상근직 또는 선출직의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삶의 질과 휴가
 - 직업활동, 가족생활, 레저와 여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연간 14일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의 50%를 소득세에서 감면해주고 있음.
 - 다만, 해당 영농활동이 하루라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이어야 함.

해당 영농인의 휴가(주말, 바캉스, 휴업일 등) 기간에 고용한 대체인력의 비용만이 소득세에서 감면되고, 질병이나 사고, 출산휴가나 교육·훈련을 위한 기간 등에 활용한 대체인력의 비용은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 한편, 지방정부에 의해서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 비용의 일부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 대체인력에 의해 농업인들은 영농활동의 제약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특히 출산이나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아주 유용함.
- 또한 여성농업인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문제는 대체인력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임.
- 대체인력은 보통 고용주 협회나 고용주 단체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임. 비용문제나 행정적인 문제 보다는 몇 가지 요인들이 대체인력 활용의 장애가 되고 있음.

부표 1-4 대체인력 활용 장애 요인

구분	장애 요인
가용성	필요한 기간에 활용 가능한 임금노동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건 아님.
지속성	대체인력이 필요한 기간 동안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영농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예컨대 출산휴가 기간 동안 4명 내지 5명의 대체인력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이들이 제대로 영농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습득하게 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함.
능력	가축사육이나 꽃 재배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능력을 갖춘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음.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협회가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

- 협회들 간의 상호협력과 대체인력에 대한 요구를 지역적으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전파되도록 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장애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부표 1-5 사회적 지위와 사회보장 관련 주요 일지

연도	농업경영주(남/여)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	임금노동자(남/여)
1945	MSA 설립		
1951~ 1958			노후보험: 단체협약에 따라 건강·출산 등 사회보장 급여(ASA)
1961	AMEXA(건강·출산)		
1966	ATEXA(산재)		
1972			산재 및 직업병
1973		농업경영주의 협력자 지위	
1977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수당	출산휴가 및 대체인력수당	
1977	여성용 '200시간 연수'		
1980		'함께 영농하는 동료' 지위	
1982	여성도 회사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경영주 지위 획득 가능	여성도 회사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 경영주 지위 획득 가능	
1985	EARL 관련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 획득	EARL 관련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 획득	EARL에 고용 가능
1988	여성도 이농지원 대상		
1999		'함께 영농하는 동료' 지위 '배우자-협력자' 지위로 대체	법정 노동시간의 절반 이하여도 농업 회사의 노동자가 될 수 있음
2002	직업위험예방기금	직업위험예방기금	
2003	RCO		
2005		경영주, 배우자-협력자, 임금노동자 중 한 가지 지위 선택 의무화	
2010	부부 사이에도 GAEC 설립 가능	부부 사이에도 GAEC 설립 가능	

자료: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여성농업인 지위 개선의 요인

○ 지난 60여 년 동안의 농업 부문에서의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가져온 몇 가지 요인 중의 하나는 여성운동가의 노력임.

-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존엄성과 재평가를 위한 그들의 투쟁과 이를 지지한 단체가 주요한 역할을 함.
- 그런데 이는 보다 넓은 의미의 여성해방 운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의 구조적 변화, 농업생산 방식의 변화, 농촌생활의 변화를 추동했던 힘도 활용함.

3.1. 세계화 과정의 경제적 논리

○ 프랑스 농업이 여전히 수공업적이고, 농업에 대한 시장의 지배가 약하고, 농민의 부채와 자본 모두 크지 않을 때, 노동은 계산되지 않았음.

－ 영농활동은 하나의 생산단위처럼 작동했는데, 남성·여성·청소년·노인 등 각 구성원은 자신들의 자리가 있었으며, 노동력과 능력에 따라 각기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었음.

－ 여성들의 지위는 농촌사회에 의해 정해졌는데, 이들이 보유한 자산(지참금으로 토지를 가져올 수 있었음)과 영농활동에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음.

－ 여성들은 남편과 시부모에 의해 종속됨. 이들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소득이 따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떠날 수도 없음)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산의 세습에 필수적인 후대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여성들의 상황에 대한 협상은 가능하지 않았으며, 당시의 경제적 모델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음.

○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이때부터 기계화와 경지정리가 활발해졌으며, 여성노동력의 유용성의 일부가 부차적인 것이 됨.

－ 유전학적 발견은 전통적인 윤작을 완전히 변화시킴. 하지만 생산요소, 특히 노동력과 인적자원 부분에서의 심층적인 구조변화를 야기한 것은 EU 공동농업정책이었음.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가 중첩되어 효과를 발휘함.

－ 기계화와 경작법의 발전에 따라 남성에 의해 독점되는 노동조건이 생성됨. 기계는 남성들의 영역이었으며, 이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여성들의 부분적 실업이나 임시직 노동으로 귀결됨. 이렇게 여성들은 조정변수로 그 지위가 하락함.

－ 이와 함께 여성들의 직업상의 노하우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거나(작은 가축을 기르던 사육장은 공장으로 변함), 까다로운 것이 됨(위생 관련 규범, 품질 규정, 농장전환 관련 규범 등).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에 농업 부문의 임금노동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임.

- 도시화, 산업과 서비스의 발전은 농촌의 청년들을 끌어들이. 특히 여성들의 경우가 더 심했음. 이들은 농촌에 남아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보다 편안한 생활 방식을 선호함. 농촌 출신 여성들은 보수가 낮고, 숙련이 필요 없는 임시직을 기꺼이 받아들임.
- 이리하여 국민경제가 여성노동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농업에서 제2차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바뀜. 국가는 여전히 농촌에서 태어난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관심이 없었음.

○ 농업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 적절하게 급여를 지급할 정도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님.

- Mansholt계획과⁴⁷⁾ Vedel계획의⁴⁸⁾ 저금리 융자 지원으로 농민부채는 일반화되었으며, 생산량과 수익성을 위한 경쟁이 강화되었음. 경영본부는 생산성을 계산했으며, 가격은 조정되었고, 몇몇 품목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됨.
- 이와 동시에 농산물 가격은 곡물에 둘러싼 국제협상과 주식투기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음. 프랑스 농업의 수익성은 정부의 보조금, 즉 가난한 나라(예컨대 설탕) 또는 대규모 생산자(옥수수과 곡물의 경우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은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레일리아)와 가격 차이를 메우기 위해 지불되는 보조금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됨.
- 바로 이 때문에, 농촌의 여성운동가와 JACF, CNJA 등과 같은 조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45년과 1980년 사이의 농촌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더디게 진행됨.

○ 한편 대규모 이농으로 프랑스 사회에서 임노동이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일반화되었음.

47) 유럽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목표로 수립된 계획인데, 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Sicco Leendert Mansholt(1972년 3월부터 1973년 1월까지 유럽위원회 의장 역임)의 성을 따서 명명하였다.

48) 당시 Edgar Faure 장관의 요청으로 진행된 프랑스 농업 전망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던 Georges Vedel의 성을 따서 명명하였다.

- 수공업자, 상인, 농민 등의 수가 감소하였고, 이는 자영업자의 지위를 소외시켰음(이러한 사정은 유한책임1인기업이 설립 가능해진 최근까지 지속됨). 이렇게 되자 영농활동에서의 여성노동을 재인식하지 않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짐.

- 농업생산에서 임노동 관계가 발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왜냐하면, 유연성이 거의 없고, 협동조합에 의해 전국 단위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단체협약의 제약을 받기 때문임. 영농활동을 수행하면서 부딪히게 될 예기치 못한 상황, 위험, 노동의 제약 등에 따라 값비싼 추가 노동과 수익이 나지 않는 '죽은' 노동 시간이 생길 수 밖에 없음.

- 임노동 관계는 속도와 양을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생산활동에 적합함. 실제로 농업 부문의 여성임금노동자는 많은 경우 임시직이며, 노동시간 명세서는 다른 산업체만큼 엄격하지 않음.

○ 관련 기관과 협동조합, 그리고 국가는 여성도 개별기업가로서의 책임과 위험을 함께 나누도록 격려하게 됨.

- 여성들은 농업경영주나 배우자-협력자가 되었음. 이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현된 이득에 따라 지급되었음.

-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유연성, 가용성, 안정성이 높은 여성노동력을 현대화된 농업 경제에 포섭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였음.

○ EU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는 농업경영주인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에 강조점을 두게 될 것이라는 것임.

- 2013년 이후의 개혁프로젝트에 따라 ha당 지불금이 점차적으로 균등화될 예정인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경작규모가 작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반면, 여성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도 많이 한 분야, 즉 단순한 유통경로, 생산품목의 다양화, 농촌관광 등을 위한 정책은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3.2. 문화적·정치적 논리: 프랑스 여성들의 지위 향상

○ 1968년과 1977년 사이에 여성들의 평등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많은 법률이 통과되었는데, 그 동력은 여성노동의 일반화, 교육수준의 향상, 휴가와 현대적 편안함에 대한 바람, 일상생활에서의 가톨릭교회의 중압감 완화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이었음.

–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은 여성운동가들의 활동의 결과인데, 이들은 여성 모두를 위해 발언을 한 것이지 농촌여성들을 특별히 대변하지는 않았음.

– 농촌여성운동가들은 터부를 없애고 전체 사회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들만으로는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웠음.

– 여성들의 더 나은 지위를 인정한 것은 정부 당국과 남성 농업경영주가 주도하는 단체였음.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농업의 수익성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된 것임.

○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적 운동(‘일하는 소농’, 통합사회당, 소농연합회 등)은 당시에 정착되기 시작한 자본주의와 생산(성) 제일주의 모델에 비판적인 담론을 개발함.

– 그들의 인본주의적, 혁명적 사고는 여성의 상태에 대한 염려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계급투쟁이나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을 선호함.

○ 한편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진보의 일부는 여성농업인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거의 활용되지 않음. 여성들이나 희생자들을⁴⁹⁾ 위한 조직의 주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설치되고 공식적인 지원을 받게 됨.

– CNIDF(Centre National pour les Droits des Femmes et des Familles), 여성과 가족의 권리를 위한 기구

– INAVEM(Institut National pour l’Aide aux Victimes et de Médiation), 희생자 지원과 지원 담당 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위한 기구

⁴⁹⁾ 대형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역주)

- Association de médiation familiale: 가족관계 조정을 위한 기구
- Maisons de justice et du droit, 정의와 권리의 집
- Numéros d'urgence pour les femmes victimes de violence, 폭력피해여성의 전화

○ 여성들의 권리에의 접근과 시민성의 각성 등을 위해 이 기구들이 만들어진 것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에 의함.

- 지배적인 생활방식이 된 도시의 삶에서 겪게 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농촌여성들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부부 사이에서, 상속재산이나 자신들의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진행되었음.

○ 결론적으로 농촌여성들의 상황 변화를 야기한 것은 주로 거시경제적 요인 때문이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1945년과 1977년 사이에 이들이 여러 가지 권리를 획득하고 다시 인정받게 된 것은 대규모 이농에 의해서 발생함.
- 지난 30년 동안 새로운 대안의 길이 열렸는데, 산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비교해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여성농업인의 지위는 명확해졌고, 평등해짐.
- 이제 사회 전반의 발전을 농촌 사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남았는데, 급여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조건의 특수성을 인정받는 것임. 이는 아마도 보다 조직화된 농촌여성운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것임.

참고문헌

김수석 외. 2013. 맞춤형 농정 지원 등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석 외. 2019.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외. 2012. 여성농업인의 경제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1/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외. 2012.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외. 2013. 여성농업인의 경제경제·사회적 역할 제고방안(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은미 외. 2013. 프랑스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제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농어업동향과.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농어업통계과.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통계연보.
일본 農林水産省 経営局就農・女性課女性活躍推進室. 2020년 6월. “農業における女性の活躍推進について”.

<참고 인터넷 사이트>

농림사업정보시스템 (<https://uni.agrix.go.kr/>)

<참고 인터넷 기사>

농민신문, 2020.06.08. “지역축협·품목농협도 복수조합원제 도입하도록 최선”.
(<https://www.nongmin.com/plan/PLN/SRS/323268/view>)
농민신문. 2016.05.14. “농협, 생각해봅시다 <1부>농민, 농협을 말한다(7)여성조합원 임원은 ‘하늘의 별따기’”. (<https://www.nongmin.com/plan/PLN/SRS/78039/view>)
농촌여성신문. 2020.04.10. “농식품부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장의 알기 쉬운 여성농업인 정책(1)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첫걸음은 경영체 등록.”.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16>)
한국농정신문, 2019.08.11. “여성농민운동 미완의 제도개혁과제, 농협.”.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8290>)
한국농정신문. 2020. 07. 07. “지역농협 유리천장, 얼마나 켜나?”.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79>)